

# 푸드뱅크의 定着化 方案

鄭基惠

朴壽天

金映來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머 리 말

현재 세계는 절대 빈곤자의 증가와 더불어 식량폐기물도 함께 증가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즉, 미국, 유럽 지역에서는 농업·식품산업·유통업의 발달로 식량이 과잉 생산되고 있으며 이 과잉분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과잉 생산된 식량은 시장내에서 모두 소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먹을 수 있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들로 인해 식량의 손실과 廢棄는 일상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폐기처리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가공식품의 경우 연간 총생산량의 10% 정도가 폐기되어 資源의 浪費를 초래하는 한편, IMF체제 이후 실직과 노숙에 의한 굶주림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몇 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많은 국가들의 福祉狀態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들로는 정부의 재정적 제한에 의한 공공 및 사회부문 지출의 삭감, 경제적 불경기나 직업 선호도에 의한 비자발적 失業의 증가, 그리고 절대 빈곤과 굶주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전세계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지구인 5명중에 1명은 굶주림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절대적인 貧困에 머무는 사람은 12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食品의 재활용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선기관이 바로 푸드뱅크이며, 푸드뱅크

는 196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는 캐나다, 유럽지역에서 활발한 救護活動을 펼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 활동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다.

풍요와 빈곤이 상존하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우리나라도 1998년 1월부터 푸드뱅크 사업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9월에는 示範事業을 마치고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전국 및 지역별 조직체제 구축과 한국적 여건에 알맞는 푸드뱅크 모형 개발을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푸드뱅크 사업의 정착화를 위하여 거의 30년의 역사를 갖고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韓國型 푸드뱅크의 模型開發에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 푸드뱅크의 효율적인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院의 정기혜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보건복지부 박수천 과장과 김영래 주임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유럽 등 자료수집에 큰 도움을 주신 건국대학교의 민상기 교수, 4개 시범지역의 푸드뱅크장과 우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준 52개 지역 푸드뱅크장, 원고검독을 맡아주신 우리 院의 이상영 부연구위원, 노용환 책임연구원, 그리고 보고서 정리를 도와준 이난희 연구조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의견이며 우리 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敬培

# 目次

要約	11
I. 序論	25
1. 研究背景	25
2. 研究對象 및 方法	27
II. 푸드뱅크 事業 現況	28
1. 目的	28
2. 推進經緯	28
3. 寄託對象 食品	29
4. 運營原則	29
5. 受惠對象者	36
6. 運營體系	37
7. 寄託惠澤	38
III. 푸드뱅크 事業 實績 및 問題點	39
1. 示範事業 運營 實績	39
2. 擴大事業 實績	57
3. 運營上의 問題點	61
IV. 外國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68
1. 各國의 運營 現況	68
2. 國家間 運營 比較	111

V.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設定 .....	118
1. 基本方向 .....	121
2. 基本目標 .....	121
3. 政策導出 .....	121
4. 政策樹立 .....	122
5.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開發 .....	130
6.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設定의 政策的 含意 .....	134
參考文獻 .....	136
附    錄 .....	139

## 表 目 次

〈表 II- 1〉 寄託食品의 類型 및 主要 供給處 .....	29
〈表 II- 2〉 1998年度 社會福祉施設 및 受容 現況 .....	37
〈表 III- 1〉 푸드뱅크 事業實績 .....	42
〈表 III- 2〉 사랑의 食品 寄託者·受領者 名單 .....	43
〈表 III- 3〉 푸드뱅크 會員카드 .....	44
〈表 III- 4〉 사랑의 食品 管理臺帳 .....	45
〈表 III- 5〉 푸드뱅크 示範事業의 地域別·月別 實績 .....	47
〈表 III- 6〉 푸드뱅크의 寄託會員 現況 .....	48
〈表 III- 7〉 푸드뱅크의 寄託食品 實績 現況 .....	50
〈表 III- 8〉 寄託物品 分配 實績 .....	51
〈表 III- 9〉 푸드뱅크의 弘報實績 現況 .....	53
〈表 III-10〉 各 示範地域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	54
〈表 III-11〉 廣域 푸드뱅크의 現況 .....	59
〈表 III-12〉 基礎 푸드뱅크의 現況 .....	60
〈表 III-13〉 우리나라 푸드뱅크 事業現況과 問題點 .....	67
〈表 IV- 1〉 食品 安全(Food Secure)의 區分 .....	69
〈表 IV- 2〉 푸드뱅크가 支援하는 福祉機關 數 .....	73
〈表 IV- 3〉 年度別 寄附食品量 .....	74
〈表 IV- 4〉 1996年 分配 現況 .....	74
〈表 IV- 5〉 稅金減免 內譯 .....	80
〈表 IV- 6〉 캐나다의 貧困 現況 .....	81
〈表 IV- 7〉 캐나다 푸드뱅크의 運營 現況 .....	84

〈表 IV- 8〉	Winnipeg 푸드뱅크의 受惠家口對象 現況	86
〈表 IV- 9〉	年度別 食品 寄託量	90
〈表 IV-10〉	Winnipeg 地域의 貧困	92
〈表 IV-11〉	Mustard Seed Church 푸드뱅크 運營現況	93
〈表 IV-12〉	1997年 各國別 푸드뱅크數와 活動數	96
〈表 IV-13〉	年度別 푸드뱅크 數와 寄託量 變化 推移	98
〈表 IV-14〉	寄託團體別 寄託量	98
〈表 IV-15〉	1997年 各國別 分配 現況	99
〈表 IV-16〉	푸드뱅크 勤務人力의 報酬 現況(1997年)	100
〈表 IV-17〉	벨기에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106
〈表 IV-18〉	老宿者들의 食品供給對策 比較	110
〈表 IV-19〉	主要 外國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比較	117
〈表 V- 1〉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開發	133

## 그림 目次

[그림 II-1] 푸드뱅크의 運營體系 .....	38
[그림 III-1] 푸드뱅크의 報告體系 .....	46
[그림 IV-1] 美國 푸드뱅크의 組織體系 .....	71
[그림 IV-2] 프랑스 푸드뱅크의 組織體系 .....	103
[그림 V-1] 푸드뱅크 運營의 3大 要素 .....	118
[그림 V-2]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開發의 흐름圖 .....	120

## 附錄 目次

<附表 1> 벨기에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49
<附表 2> 스페인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51
<附表 3> 프랑스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53
<附表 4> 그리스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55
<附表 5> 아일랜드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57
<附表 6> 이탈리아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59
<附表 7> 포르투갈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61
<附表 8> 英國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63
<附表 9> 체코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65



## 要 約

이 연구는 서울, 과천, 대구,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가 현재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 푸드뱅크 사업의 現況과 問題點을 분석함으로써 이 사업을 조기에 定着시키기 위한 한국적 모형 개발 및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사용된 연구방법은 외국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文獻考察과 4개 시범지역 및 52개 확대 실시 지역의 현황 파악을 위한 現地調査 및 郵便調査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푸드뱅크 事業의 概況

- 定意: 푸드뱅크는 남은 식품을 수거하여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社會福祉體系임.
- 目的: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연결하고, 이러한 연결과정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食品資源의 浪費도 줄이는데 있음.
- 運營體系: 현재 우리나라의 푸드뱅크는 전국 푸드뱅크연합-광역 푸드뱅크-기초 푸드뱅크-단위 푸드뱅크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저소득가정 등에 寄託품을 分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단위 푸드뱅크는 복지시설과 같이 수혜자가 됨.

- 運營原則: 푸드뱅크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음. 즉, 최소비용 원칙, 근거리 수령 원칙, 이웃동참유도 원칙, 기탁자 예우 원칙, 빈곤배려 원칙, 최적분배 원칙, 보관기간 최소화 원칙, 사랑의 지역공동체 조성 원칙, 취식자 책임 원칙, 그리고 책임·조화·협조의 원칙 등임.
- 寄託食品: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寄託對象이 될 수 있음.
- 受惠對象者: 주요 수혜자는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저소득계층
- 寄託者 惠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해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탁자 소득의 5%내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부여 받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해 부가가치세도 면제됨. 또한 1999년 1월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4조』가 개정되어 기탁식품 전액에 대한 세금감면이 실시될 예정임.

## 2. 푸드뱅크 事業 現況 및 問題點

### 가. 事業推進 現況

- 特殊電話 設置·運營: 『1377』이라는 푸드뱅크 전용전화를 1998년 9월 17일 개통시켰음. 이 전화는 각 56개 푸드뱅크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전화의 운영시간대는 09:00~22:00이며 이외 시간에도 착·발신장치가 되어 있다. 이 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나 해당 푸드뱅크에서 조달하고 있음.

- 事業指導·支援: 기탁에 따른 푸드뱅크의 분배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기탁회원 관리와 홍보를 통한 기탁회원 및 기탁품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서식(푸드뱅크 사업실적, 식품기탁자 및 수령자 명단, 푸드뱅크 회원카드, 기탁식품 관리대장)에 의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지원하였음. 각 관련서식에 의한 실적보고는 매월 전국 푸드뱅크연합이 자체 수집한 실적을 직접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채널과 각 푸드뱅크가 관련 시·도에 보고한 실적이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는 두 가지 채널이 있음. 보건복지부는 실적보고를 통해 기탁자, 기탁물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탁식품의 분배, 홍보활동 내용 등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푸드뱅크를 현지 방문하여 지도하거나 정책간담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음.

#### 나. 地域別 示範運營 實態

- 示範事業 現況: 서울, 과천, 대구, 부산의 4개 지역에서 1998년 1월부터 9월에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기 전까지 실시되었음. 서울을 제외한 3개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으로 과천은 양로원, 대구와 부산은 모자원이 事業 主體가 되어 실시하였으며, 대량의 寄託과 分配 業務는 보건복지부와 서울 푸드뱅크에서 주로 실시되었음. <表 1>에 시범사업 지역별 운영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擴大實施 現況: 1998년 10월부터 전국의 56개 지역에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가 각 시·군·구의 협조하에 조직되어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表 1〉 各 示範地域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과천
전담인력	1명	없음	없음	없음
시설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장비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사업	없음	모자원	모자원	양로원
운영예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자원봉사자	없음	없음	없음	있음
홍보주체	보건복지부	푸드뱅크	시	없음
필요사항	인력, 사무실	차량유지비	인력(운전기사) 운영비	대형운반용 주방기기

#### 다. 運營上의 問題點

- 總括組織의 脆弱: 광역 푸드뱅크와 기초 푸드뱅크는 각 시·군·구의 협조하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나 이들을 총괄할 전국 푸드뱅크연합이 전국복지단체 중 시설수나 회원수 그리고 사업수행도가 타복지단체에 비해 미미한 특정 福祉團體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運營費 未確保: 사무실 유지비, 기탁품 수송 차량 유지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현재는 확보된 豫算이 미미한 실정임.
- 專擔人力 不在: 기존 시설을 근거로 푸드뱅크가 설치되었지만 전담인력 없이 대부분 기존사업의 인력이 푸드뱅크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음.
- 弘報 및 誘引責 不足: 푸드뱅크에 대한 지속적인 중앙 및 지방단위의 弘報活動이 있어야 하나 미흡하여 식품기탁자가 푸드뱅크에 관한 인식이 있는 몇몇 대기업 식품업체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

련 유관단체의 협조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개인 기탁자를 유인하기 위한 교통비 감면 등의 유인책도 외국과 달리 개발되어 있지 않음.

- 安全性 確保 未洽: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 남은 식품 등으로 푸드뱅크에 기탁되는 식품은 정상제품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분배를 위한 수송, 보관 등의 단계에서 적정보관온도 유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冷蔵·冷凍用 食品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형편임.
- 關聯 法 및 制度 補完 未洽: 푸드뱅크 사업의 시작이 법적 근거나 제도하에 실시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關心 및 合意를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국과 같은 법적 뒷받침이 미흡함. 즉, 기탁품이 정상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기탁업체나 기탁자, 그리고 푸드뱅크 직원들의 事故 責任을 免除시켜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형편임.

### 3. 外國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 가. 美國

- 시작: 1967년 자원봉사자인 John Van Hengel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전 지역에 200개소의 푸드뱅크가 활동 중임. 또한 푸드뱅크는 1995년 미국의 10대 자선단체 중 연 \$425.1백만 상당의 기탁량과 효율성 99.7%라는 평가로 구세군, 적십자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組織體系: 중앙본부(보스턴) - Second Harvest - 지역별 푸드뱅크 - 자원자단체 - 최종수혜자
- 寄託 및 分配: 단체나 개인 모두 기탁할 수 있으며, 기탁품은 식품은 물론 생활용품, 돈(신용카드도 가능)도 기탁이 가능하며, 기탁품이 정상제품(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제품)일 경우 세계 혜택을 받음. 분배는 無料分配가 원칙이나 일부 푸드뱅크는 수혜자에게 10kg꾸러미당 일정액의 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1995년 50,193개소의 支援機關을 통해 총 2,600만명에게 분배되었고, 이 수는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지 않으며, 주요 수혜대상자는 편모(부)가정, 히스패닉 가정, 흑인가정, 노인, 영유아 계층임.
- 關聯 法 및 制度
  - Tax Reform Act: 푸드뱅크에 기탁한 제품에 일정액의 세금감면.
  - Federal Surplus Property Donation Act: 정부가 푸드뱅크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잉여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또한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Act를 기반으로 국방성에서 천만불 상당의 식품을 기탁할 수 있음.
  - Good Samaritan Act: 월별로 가장 기탁량이 많은 기탁자를 선정하여 널리 홍보함.
  - 기탁한 개인에게 호텔비, 관광비, 교통비를 10%내외 할인해 줌.
- 勤務人力: 자원봉사자를 기본으로 최소한의 월급직 직원이 근무함.
- 運營費: 기부금과 수혜자들이 지불하는 일정액을 모아 운영비로 사용함.
- 施設 및 裝備: 기탁품의 수집, 보관 등을 위한 차량, 창고와 사무실, 컴퓨터 등 사무장비가 있음.

- 弘報: 중앙단위, 지역단위로 각각 홍보활동을 펴고 있고, 『이달의 자선가』 홍보는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음.
- 運營上의 特徵: 직장에 다니는 영구빈곤자도 수혜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신선식품류도 기탁받으나 우선 분배토록 하고 있음. 관련 법에 의해 정부도 기탁이 가능함.

#### 나. 캐나다

- 시작: 1981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역적 근접성 때문인지 미국과 푸드뱅크 운영이 대동소이함. 현재 전국에 50여 개의 푸드뱅크가 활동하고 있음.
- 組織體系: 캐나다 푸드뱅크 협회-Second Harvest-지역별 푸드뱅크-지원자선단체-최종수혜자
- 寄託 및 分配: 단체나 개인 모두 기탁할 수 있으며, 기탁품은 식품은 물론 生活用品, 현금도 기탁이 가능함. 1992년 수혜대상자수는 전체 인구의 약 12%인 총 2,400만명에 달하며, 수혜대상자중 노인과 영유아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 關聯 法 및 制度: Canada Assistance Plan-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1:3의 비율로 예산을 각출하여 구호활동을 함.
- 勤務人力: 자원봉사자를 기본으로 최소한의 월급직 직원이 근무함.
- 運營費: 기부금과 수혜자들이 지불하는 일정액을 모아 운영비로 사용함.
- 施設 및 裝備: 기탁품의 수집, 보관 등을 위한 차량, 창고, 사무실, 컴퓨터 등 사무장비가 있음.

- 弘報: 중앙단위, 지역단위로 각각 홍보활동을 펴고 있음.
- 運營上의 特徵: 폭설의 영향으로 발생한 한시적인 고립자도 수혜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다른 국가에 비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은 각 지역별 푸드뱅크의 활동이 활발함.

#### 다. 유럽연합

- 시작: 1986년에 처음 조직되었고, 현재 법적으로 등록된 국가는 유럽 9개국인 회원국이나 체코가 곧 등록할 예정임. 유럽 9개국은 프랑스,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이고, 독일은 독자적인 슈퍼마켓 운영으로 푸드뱅크 활동을 하고 있음.
- 組織體系: 브뤼셀에 중앙본부가 있음-국가별 푸드뱅크
- 寄託 및 分配: 주로 개인보다는 단체의 기탁을 받고 있고, 기탁품은 잉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은 물론 생활용품, 돈도 기탁을 받고 있음. 유럽에 있는 식품회사는 일정량을 일정기간에 정기적으로 기탁토록 하고 있으며 기탁받은 물품은 국가별로 분배함. 주요 기탁단체는 食品製造業體, 返品, 流通業體, 個人으로 크게 대별됨.
- 關聯 法 및 制度: Association loi(단체법)이 1986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푸드뱅크에 기탁한 제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기탁품에 의한 피해 발생시 기탁자가 책임을 지지 않음.
- 勤務人力: 자원봉사자와 최소한의 월급직 직원이 근무함.
- 運營費: 기부금을 모아 운영비로 사용함.
- 施設 및 裝備: 기탁품의 수집, 보관 등을 위한 차량, 창고, 냉장·냉동차량과 창고, 사무실, 컴퓨터 등 사무장비가 있음.



- 弘報: 본부와 각 국가별로 기탁자 유인을 위한 각각의 홍보활동을 펴고 있고, 본부는 특히 多國籍 食品業體를 대상으로 기탁홍보 활동을 함. 그리고 국가별로 홍보하기 어려운 업체를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함.
- 運營上의 特徵: 유럽내 잉여농산물의 분배 등 유럽연합내의 국제 규모 활동에 치중하며, 다른 대륙에 식품지원을 할 때 유럽국가들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음. 다른 나라와는 달리 活動目的에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포르투갈은 지역 푸드뱅크인 리스본 푸드뱅크가 국가를 대표하고 있고,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는 푸드뱅크가 1개소씩만 있음.

#### 라. 프랑스

- 시작: 1984년 유럽 지역에서는 처음 시작하였으며, 1998년 현재 72 개소가 설치되었고, 유럽연합의 푸드뱅크 사업을 주도하며 유럽에서는 가장 활발한 푸드뱅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 組織體系: 파리에 中央本部가 있음-지역별 푸드뱅크-지원자선 단체-수혜대상자
- 寄託 및 分配: 단체나 개인 모두 기탁할 수 있으며, 기탁품은 식품은 물론 생활용품, 성금도 기탁이 가능함. 분배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료분배가 원칙이며, 개인·자선단체 모두를 분배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배형태는 無料給食所와 특정식당의 급식제공과 식품 꾸러미 형태로 분배함. 채소나 과일 등 신선식품의 기탁과 분배가 가능하며, 수혜자가 식품은행에 와서 직접 수령해 갈수도 있고, 푸드뱅크에서 배달, 소포로도 보내줌. 기탁품이 商業化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

- 關聯 法 및 制度: 1985년에 Association loi(단체법)이 제정되어 푸드뱅크에 기탁한 제품에 대해 일정액의 稅金을 감면해주고 있고, 기탁품에 의한 피해발생시 기탁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 勤務人力: 자원봉사자를 기본으로 파견근무자와 최소한의 월급직 직원이 근무함.
- 運營費: 기부금과 수혜자들이 지불하는 일정액을 모아 운영비로 사용함.
- 施設 및 裝備: 기탁품의 수집, 보관 등을 위한 차량, 창고와 특히 냉장·냉동차량과 창고가 구비되어 있음.
- 弘報: 본부와 각 지역별로 기탁자 유인을 위한 각각의 홍보활동을 펴고 있으며, 홍보 전문가의 파견근무로 홍보활동이 세계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運營上의 特徵: 근무인력이 專門織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창고운영, 냉장시설 운영 등 특수기술을 가진 인력이 계약에 의해 푸드뱅크에서 파견근무를 함. 또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냉장·냉동 창고 및 차량이 구비되어 있어 新鮮食品類의 기탁 및 분배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은 구세군, 가톨릭 사제단 등 주로 종교 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음.

#### 마. 獨逸

- 시작: 1986년에 처음 푸드뱅크 사업의 개념을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독일 전역에 약 80여 개의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영업중에 있음.
- 組織體系: 중앙본부-지역별 푸드뱅크-슈퍼마켓-수혜대상자

- 寄託 및 分配: 기탁식품은 정상제품만 가능하며, 기탁품은 주로 단체나 개인의 기탁, 유럽연합의 분배품으로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통해 低價(정상가의 40% 수준)로 수혜대상자에게 판매함. 수혜대상자들에게는 푸드뱅크 이용카드를 발급하여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토록 하여 기탁품의 분배형태가 일반 購買形態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함.
- 勤務人力: 자원봉사자를 기본으로 파견근무자와 최소한의 월급직 직원이 근무함.
- 運營費: 수혜자들에게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판 대금과 기부금을 모아 운영비로 사용함.
- 施設 및 裝備: 슈퍼마켓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나 냉장·냉동시설은 미비한 편임.
- 弘報: 중앙본부와 각 지역별로 기탁자 유인을 위한 각각의 홍보활동을 펴고 있고 본부는 대기업, 지역 푸드뱅크는 지역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탁홍보 활동을 함.
- 運營上의 特徵: 푸드뱅크가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기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있음. 냉장·냉동시설의 미비로 신선식품류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탁품은 정상제품만 기탁받음. 유럽연합에 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기탁품의 분배를 받고 있음.

#### 4.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設定

- 基本方向: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확산시키고 활용 가능한 잉여식품의 廢棄 防止 및 안

전관리에 의한 再活用 확대임.

- 基本目標: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푸드뱅크 사업의 모형개발을 위한 기본목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짐. 첫째는 사회보장체계 내에서의 푸드뱅크의 역할, 조직 및 운영체계 정립이고, 둘째는 기탁자와 수혜자의 확대 방안 마련이며, 마지막은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집, 보관, 및 분배를 실현하는 것임.
- 障害要因: 이와 같은 푸드뱅크 사업의 기본방향과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런 요인들은 푸드뱅크 사업의 조기 정착화와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대한영양사회 등과 같은 관련 단체의 협조가 미흡하며, 기탁된 식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기탁자 및 푸드뱅크 운영자의 책임을 면해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기탁 확대가 쉽지 않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의 최종 수혜자가 현재는 시설 수용자로 한정되고 있어 사업의 의미가 반감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도 최소한의 운영비가 기탁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푸드뱅크의 운영비가 한정된 정부 사회복지예산과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다른 복지사업에로의 집중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음.
- 促進要因: 장애요인과는 반대로 푸드뱅크 사업의 조기 정착화를 도와주는 요인도 많음. 우선 食品의 浪費가 심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IMF경제 위기를 맞아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푸드뱅크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책보다 높음.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전량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식품도 폐기처분

하였는데 명년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등 食品公典 및 食品衛生法の 개정으로 기탁량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최근 발표된 단계별 社會安全網 중 제3단계 안전망내에 식품권이 포함되어 있어 푸드뱅크 사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사업의 확대 실시에 근간이 될 수 있음. 또한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의한 『좋은식단』 실시 등과 같은 관련 제도 실시에 따라 남은 음식의 기탁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98년 9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푸드뱅크 조직이 확대되어 시·군·구 등의 지자체가 소속 푸드뱅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임.

- 定着方案: 이와 같은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형 푸드뱅크 사업의 조기 정착화를 위한 模型開發, 즉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표성을 갖는 전국연합조직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이고, 둘째는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 및 향후 기탁금까지 기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분배도 기탁품의 여러 종류와 수혜대상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달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셋째는 단체건 개인이건간에 기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어야만 향후 기탁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임. 넷째는 자원봉사자 등 민간 부문의 푸드뱅크 사업 참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섯째는 기탁자나 기탁품의 安全管理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섯째는 공공기관이 푸드뱅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만이라도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하겠음. 일곱째는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되어야 사업의 정착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푸드뱅크 간 情報網이 구축되어야만 기탁 및 분배, 재고품 관리 등 푸드뱅크

크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정책 대안은 일시에 추진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영역에서 푸드뱅크가 차지할 역할에 따라 연차적인 모형별로 정착되어야 할 것임.

-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開發: 실시시기와 운영 및 조직상의 특성별로 기초형, 발전형, 그리고 선진형 등 3개 유형으로 모형을 개발하였음.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基礎型은 1998년 시범사업 후 확대 실시된 형태로 1999년에 사업의 완전 정착을 목적으로 함. 發展型은 선진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형태로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단계로 관과 민의 공동 운영, 상근직원의 근무, 생활용품까지 기탁품 확대, 개인 및 한시적 대상자까지의 수혜대상자 확대, 저온유통시스템의 구비, 광역 푸드뱅크까지의 정보망 구축 등이 마련됨. 先進型으로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완전히 마련된 형태로 총괄조직은 국제교류에 의한 식량지원 등의 세계적 사업을 기획하고, 低溫流通시스템의 완비로 신선식품류까지 기탁과 분배가 가능하며, 완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게 됨. 그리고 分配方式도 다양화하여 무료지원, 판매, 무료급식 등을 실시토록 하며, 푸드뱅크간 정보망이 완전 구축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I. 序論

## 1. 研究背景

최근 폐기되는 시식 가능한 食品의 再活用に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면서 푸드뱅크(사랑의 식품나누기)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Food Bank를 우리 나라에서는 『푸드뱅크』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문자 그대로 뱅크 즉 은행업무가 돈이 아닌 푸드(식품)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식품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계시켜 주는 일종의 福祉制度이다.

세계 최초의 푸드뱅크가 1967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유럽도 1984년에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하는 등 푸드뱅크의 역사가 약 30년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8년 1월에 보건복지부가 처음 서울·과천·대구·부산 등 4개 지역에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示範事業을 실시하고, 9월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와 있다.

푸드뱅크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도 부분적으로 食品의 寄託과 受惠가 중소기업의 식품제조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와 사회복지기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나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남은 식품을 기탁하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식품의 기탁과 분배가 IMF 체제 이후 失職에 의한 露宿者들이 증가하면서 기탁된 음식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의 따뜻한 옛 풍습과 미덕인 식품을 나누는 습관을 오늘에도 실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즉

사회적 연대감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계속적인 실업의 증가 및 정부 福祉豫算의 不足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푸드뱅크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것이므로 사업초기에 사업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8년 1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우리나라의 푸드뱅크는 현재 전국 확대 실시 및 제도 정착을 위한 모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우리나라 푸드뱅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과 우리나라 시범사업 실시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푸드뱅크에 관한 종합적인 홍보 및 기탁 유도 방안, 관련 법 및 제도 등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고려된 우리 실정에 맞는 푸드뱅크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시범사업 중인 4개 지역의 푸드뱅크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早期 定着化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등 푸드뱅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운영 현황을 수집,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알맞는 효율적인 푸드뱅크의 運營 模型을 개발함에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배경과 푸드뱅크의 개념 및 운영원칙, 그리고 연구대상 및 방법 등 보고서의 개괄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제2장은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제3장은 푸드뱅크 운영 현황, 제4장에서는 외국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과 국제간 비교·분석, 제5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푸드뱅크 모형개발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는 이 보고서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다.



## 2. 研究對象 및 方法

### 가. 文獻考察

이 연구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및 유럽의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및 체코 등의 10개국과 일본이었으며, 연구방법은 주로 인터넷이나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대상 국가들 중 프랑스, 독일은 現地出張을 통해 1998년에 발행된 1997년의 최근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단, 인터넷에 의존한 미국과 캐나다 자료들은 대부분 1996년 혹은 1997년에 발표된 1995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 나. 現地調査

示範事業을 실시한 서울, 과천, 대구, 그리고 부산의 푸드뱅크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표에 근거하여 사업실적, 운영형태, 지역적 특수성 등 지역별 시범사업 현황, 애로사항,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정부차원의 협조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 다. 郵便調査

시범사업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56개 각 지역별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10월달 1개월간 사업실적 및 푸드뱅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하였다. 조사표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10월의 사업실적, 종사자 현황,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가장 필요한 중앙 및 지방 정부지원 사항,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예산액, 그리고 연구진에 바라는 사항 등이었다.

## Ⅱ. 푸드뱅크 事業 現況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시도된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사업의 목적과 추진 경위, 기탁대상 식품, 운영원칙, 운영체계, 수혜대상자, 그리고 기대효과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目的

푸드뱅크는 生産·流通·販賣·使用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 조정하는 창구로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연결과정을 통하여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시식 가능한 식품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식품자원의 낭비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推進經緯

- 1998년 1월: 시범푸드뱅크 설치(서울, 과천, 대구, 부산)
- 1998년 6월: 푸드뱅크에 관한 연구사업 시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8년 8월: 푸드뱅크 운영의 국제비교 보고서 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8년 9월: 『푸드뱅크 1377』 특수전화 설치

- 1998년 10월: 푸드뱅크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
- 1998년 12월: 푸드뱅크에 관한 정책 대토론회 개최

### 3. 寄託對象 食品

푸드뱅크에서 취급하는 기탁대상식품의 종류는 <表 I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판매재고 상품, 생산과잉 농축수산물, 상품화가 안된 제조식품, 그리고 덜어 먹은 조리된 식품 등이다. 외국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푸드뱅크에서 現金은 기탁받지 않고 있다.

<表 II-1> 寄託食品의 類型 및 主要 供給處

구분	대상품목	주요 공급처
가공식품	통조림, 햄류, 빵류, 당류, 장류, 조미료 등	제조회사, 유통·판매회사, 슈퍼마켓, 제과점, 각 대리점 등
농수축산물	채소, 과일, 곡물, 생선, 육류, 양념류 등	농수축산물센터, 농장, 방앗간 등
조리된 음식	패스트푸드, 빵과 밥류, 반찬류, 기타요리 등	패스트푸드점, 뷔페, 연회식당,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등

### 4. 運營原則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켜야 할 10가지 운영원칙을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책임·조화·협조의 원칙: 푸드뱅크 운영은 지역단위로 하되 인접 및 전국 푸드뱅크와 조화롭게 운영한다

- 근거리 수령 원칙: 사랑의 식품수령은 가까운 실수요자 책임하에 하되 인근 지역회원이 협력한다.
- 최소비용의 원칙: 푸드뱅크는 자기장비·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한다.
- 이웃 동참유도 원칙: 관할 지역내 사랑의 식품기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모든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 사랑의 지역공동체 조성 원칙: 기탁자에게는 재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 기탁자 예우 원칙: 기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접수창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물량·품목·상태·지역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한다.
- 보관기간 최소화원칙: 수령된 식품은 널리 나누어 조속히 섭취한다.
- 최적분배의 원칙: 사랑의 식품분배는 젖은 것과 마른 것, 물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 수요처를 접수받은 푸드뱅크장이 결정한다.
- 빈곤배려 원칙: 사랑의 식품은 재정이 어려운 곳에 우선 지급한다.
- 취식자 책임 원칙: 사랑의 식품은 취식자 자기 책임하에 선별하여 취사한다.

이와 같은 10가지 運營守則에 준거하여 기탁자 발굴 및 관리, 기탁 식품의 수송 및 분배·활용, 그리고 기탁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寄託者 發掘 및 管理

##### 1) 行政機關의 支援·協力

- 식품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식품관련단체장에 대하여 기관장의 협조공문(서한)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에 의한 적극적인 지도·설득을 실시한다.

- 푸드뱅크와 관련하여 예산·인력장비를 우선 지원한다(공공근로인력 우선배치).
- 푸드뱅크 사업 담당 및 협조부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 행정기관·학교·회사 등의 집단급식소는 솔선하여 식품을 기탁한다.
-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상회보·시정홍보지에 게재하고, 스티커·현수막을 부착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전광판에 표출한다.

2) 푸드뱅크 關係者에 의한 直接 說得·弘報

- 소량기탁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위푸드뱅크가 인근 기탁가능자들을 방문 설득하여 1인 1건의 寄託會員을 모집한다.
- 제조식품업체 등 대량기탁자 발굴은 광역·기초푸드뱅크가 행정기관의 협력을 얻어 직접 방문하여 기탁을 설득한다.

3) 市民團體 等 地域社會 有志의 도움

- 여성단체, 음식업·영양사·조리사·식품관련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한 사업홍보 및 캠페인을 벌인다.
- 홍보요원 및 지역푸드뱅크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한다.
- 지역시장 번영회·두부공장·콩나물공장·반찬공장 등에 대하여는 이웃·친지·지역유지 등의 알선으로 사업취지를 설명하여 기탁을 유도한다.

4) 매스컴 活用

- 푸드뱅크에 기탁된 물품의 분배, 관계자 교육, 기탁실적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 푸드뱅크를 활용한 「어려운 이웃돕기」 이벤트 사업을 추진한다.

- 미담사례를 통한 인터뷰 등 기탁사례를 기사화한다.
- PD, 작가 등을 활용하여 연속극 등 프로그램에 푸드뱅크 사례를 반영토록 한다.
- 푸드뱅크 기탁회원모집을 위한 공개 생방송을 개최한다.
- 방송사와 협조하여 공익광고방송을 실시한다.

#### 5) 푸드뱅크 寄託會員 管理

- 기탁물품의 활용처 등을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기탁회원에게 분배결과를 개별통지한다.
- 기탁회원이 보람을 느끼도록 선행을 언론기관에 홍보토록 한다.
- 기탁물품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다.
- 기탁회원과 수혜자간에 만남의 場을 마련하여 기탁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작은 기탁이라도 정성껏 수령하고 양이나 질보다 그 뜻에 감사토록 한다.
- 기탁식품 취식자에 의한 감사서한 작성으로 기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전달토록 한다.
- 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한 감사패 등을 행정기관장이 증정한다.
  - ※ 중앙에서는 연 1회 우수기탁자를 선발하여 포상 등 실시예정(자치단체별로도 시행을 권고)

## 나. 寄託食品의 輸送 및 分配

### 1) 有效期間에 의한 基準

#### - 단기

- 기탁연락을 받은 즉시 수령하고, 최단시간내에 취식토록 한다.
- 유효기간내에 소비될 수 있도록 수령 후 즉시 고르게 분배 활용토록 한다.
-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냉동보관을 철저히 한다.
- 수송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수송중에도 신선도 관리에 유의하여 가능한 적정보관 온도를 유지토록 한다.

#### - 장기

-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기탁된 물량은 수혜자간 고르게 분배하여 즉시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일부 수혜자가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보관할 수 없다.

### 2) 寄託物量에 의한 基準

#### - 소량

- 접수한 푸드뱅크에서 1차 소화하고 인접시설과 나누어 활용한다.
- 「푸드뱅크 1377」에 접수된 경우 기탁자와 가장 가까운 인접 푸드뱅크가 수송·활용토록 연락한다.
- 상위 푸드뱅크장에 의해 수령자로 결정된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면 향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 대량

- 기탁물량이 접수받은 푸드뱅크의 수요를 초과할 경우 동급의

인접푸드뱅크에 분배 활용토록 조치한다.

- 접수 푸드뱅크의 수요를 많이 초과할 경우, 푸드뱅크장의 판단에 따라 상위 푸드뱅크에 분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물량분배 권한은 의뢰받은 상위 푸드뱅크장에게 있으며, 일반 분배기준 등에 관하여는 지역내 수혜기관과 평소 협의하여 실시한다.
- 기탁식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업화하는 등 다른 용도로 유용되어서는 안된다.

### 3) 輸送距離에 의한 基準

#### － 근거리

- 기탁자의 인근수혜자가 자기 차량 등으로 책임수령하되, 여러 곳 분배시 대표자가 일괄 수령하여 분배(운번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직접 수령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송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활용토록 한다.

#### － 원거리

- 가능한 가까운 수혜자에게 분배하되 많은 물량을 원거리까지 수송할 경우 인접 수혜자의 물류비를 고려한 경제단위로 묶어 일괄 수송·분배토록 한다.
- 물량이 많아 자가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수송업체에 외주하고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여 부담할 수 있다.

### 4) 受惠者에 의한 基準

- － 접수받은 푸드뱅크장은 기탁식품에 따라 적합한 수혜자를 결정하



여 수령토록 연락한다.

- 재가복지대상, 시설개별취사(모자원), 집단취사 등 취사방식에 따른 특성 반영
  - 노인, 아동, 여성 등 음식취향에 따른 분배
- － 무료급식소, 독거노인·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가정, 도시락봉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선 지원토록 한다.

#### 다. 寄託食品의 安全管理

##### 1) 調理食品의 運搬

- － 음식을 조리하여 차량 등을 이용 운반할 때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거나 용기입구를 봉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 조리장소에서 배식장소까지 운반할 때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 음식의 배식은 가급적 찬음식을 배제하고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여 배식한다.

##### 2) 配食

- － 배식하기 전에 손을 씻는다.
- － 깨끗한 손, 깨끗한 기구를 사용하여 깨끗한 식기에 담는다.
- － 덥게 먹는 음식은 항상 덥게, 차게 먹는 음식은 항상 차게 해 둔다. 즉 더운 음식은 70℃ 이상, 찬 음식을 10℃ 이하로 보관한다.
- － 조리 전의 음식물이나 조리 이후의 식품은 실온에서 오래 방치하지 않는다. 병원성 대장균인 O-157은 실온에서 15~20분만에 2배로 증식하므로 이 점을 배식시 유의한다.

### 3) 남은 음식

- 남은 음식을 치우기 전에도 손을 씻는다. 즉, 남은 음식은 깨끗한 기구나 그릇을 이용하여 보존한다.
- 남은 음식은 변질되지 않도록 빨리 먹을 수 있는 얇은 용기에 나눠 담아 보존한다.
- 시간이 오래 경과한 음식물은 아끼지 말고 버린다.
- 남은 음식을 데칠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한다. 그 온도는 75℃ 이상이다. 찌개나 국은 끓을 때까지 가열한다.
- 조금이라도 변질이 의심되면 버린다.

## 5. 受惠對象者

푸드뱅크의 최종 수혜대상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나 개인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푸드뱅크의 수혜대상자는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이다. 푸드뱅크 사업이 초창기여서 기탁자에게 세금감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접수자이자 수혜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향후 푸드뱅크 사업이 정착되면 점차 수혜대상자층이 외국과 같이 다양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缺食兒童, 少年·少女家長, 母·父子家政, 獨居老人, 生活保護對象者 등 저소득계층이다.

<表 II-2>에는 푸드뱅크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대상자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1997년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총 819개 시설에 77,456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현재 푸드뱅크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女性福祉施設 입소자는 전체의 4%(67개 시설)에 해당하는 3,137명이다.

또한 '98년 12월 현재 전국의 무료급식소는 36개소(서울 21개소, 부산 6개소, 인천 4개소, 울산 2개소, 경기 3개소)로 약 8천여명에게 無料給食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I-2〉 1998年度 社會福祉施設 및 受容 現況

(단위: 개, %, 명)

구 분	시설수	수용인원
계	819(100.0)	77,456(100.0)
아 동	274( 33.5)	16,936( 21.9)
노 인	173( 21.1)	9,539( 12.3)
장 애 인	183( 22.3)	16,232( 21.0)
여 성	67( 8.2)	3,137( 4.1)
정신질환	73( 8.9)	17,662( 22.8)
부 량 인	43( 5.3)	12,941( 16.7)
결 핵	2( 0.2)	74( 0.1)
나 장 애	4( 0.5)	93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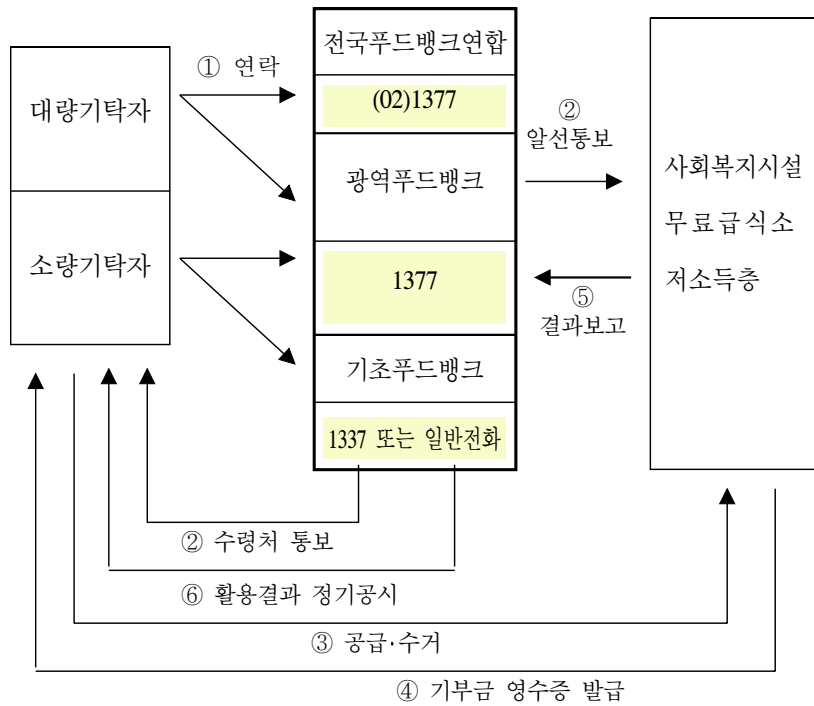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 6. 運營體系

[그림 II-1]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의 전국적인 運營體系에 관한 흐름도가 제시되어 있다.

대량 기탁자는 전국 푸드뱅크연합이나 광역 푸드뱅크에, 소량기탁자는 광역푸드뱅크나 기초푸드뱅크에 1377 또는 일반전화로 연락하여 기탁하게 되어 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 개별 수혜자를 단위 푸드뱅크로 보고 누구나 이곳에 寄託食品을 전달하고 또한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그림 11-1] 푸드뱅크의 運營體系



## 7. 寄託惠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탁한 물품에 관한 소득의 5%내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해 부가가치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 1999년 1월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4조』의 개정으로 기탁식품 전액에 대한 税金減免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업체로 홍보되어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 Ⅲ. 푸드뱅크 事業 實績 및 問題點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은 1998년 1월부터 4개 지역인 서울, 과천, 대구, 부산에서 1년간의 시범사업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민적 호응과 IMF 경제 위기는 푸드뱅크 사업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9월 말에 시범사업을 종결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10월 현재 총 56개 지역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行政區域別로 광역, 기초, 단위 푸드뱅크를 설치하고 전국 연계망을 구축하여 廣域푸드뱅크는 시·도, 基礎푸드뱅크는 시·군·구, 그리고 단위푸드뱅크는 시설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각 푸드뱅크는 월별로 사업실적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 1. 示範事業 運營 實績

##### 가. 事業別 實績

##### 1) 푸드뱅크 專用電話 『1377』 設置

1998년 9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푸드뱅크 전용전화인 특수전화 『1377』이 개통되어 전국 56개 지역 어느 곳에서도 국번없이 『1377』을 이용하여 사랑의 食品을 푸드뱅크에 기탁할 수 있게 되었다.

『1377』은 일상(13)적으로 출출(77)한 이웃에게 철철(77)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전화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 가) 設置方法

- 전화권역별로 1대를 설치하며, 준비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 「푸드뱅크 1377」 설치기관은 指定寄附金 領收證 發給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등 기탁식품 실수요 기관이 적합하다.
- 「푸드뱅크」는 전화 설치기관의 인원·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하는 효율 높은 사업이므로 이에 걸맞는 設置機關을 선정하여 설치토록 한다.
- 설치기관은 행정기관이 지정하거나 「푸드뱅크」 참여기관이 호선하여 선정한다.
- 전화설치·운영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사업참여기관에서 부담하다.

## 나) 運營方法

- 기탁자·수요자·지원자 등으로 運營協議會를 구성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운영토록 한다.
- 寄託接受는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기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대략 09:00~22:00 동안 운영하며, 이외 시간에도 착신·녹음장치 등을 설치토록 한다.
- 접수자는 감사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며, 즉시 분배·수송 책임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수·분배내역을 빠짐없이 양식에 기록하고 통계화하여 제도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실수요자 중심으로 輸送·保管에 필요한 비용을 매건 단위로 나누어 실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行政支援

- 행정기관은 「푸드뱅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탁자 모집, 인원(공공근로인력, 공익요원, 자원봉사자 등), 예산 등을 지원한다.
- 寄託食品이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 장차 「푸드뱅크」 사업이 정착되어 민간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한다.

2) 事業 指導·支援

푸드뱅크 사업의 實績 管理를 위하여 푸드뱅크 사업실적양식, 사랑의 식품 기탁자·수령자 명단, 푸드뱅크 회원카드, 사랑의 식품 관리대장 등 총 4종의 關聯 書式이 개발되어 사업실적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서식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푸드뱅크 事業實績

푸드뱅크 사업의 실적을 정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식으로 <表 III-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탁회원 현황, 기탁실적, 기탁 식품 활용 현황, 그리고 홍보현황과 특이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의 寄託會員은 일회성 기탁일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나) 食品 寄託者 및 受領者 名單

기탁받은 식품의 투명한 분배를 위하여 식품기탁자와 수령자를 동시에 정리하는 서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서식이 정리되어야만 푸드뱅크도 이 자료에 근거하여 향후 分配計劃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表 III-2〉 사랑의 食品 寄託者·受領者 名單

사랑의 식품 기탁자·수령자 명단

〈작성기관: 푸드뱅크〉

〈'98. 월분〉

주 신 곳				받 은 곳		
일 시	기 탁 자	식 품 명	물 량	일 시	수 령 자	물 량

다) 푸드뱅크 會員카드

푸드뱅크 회원카드는 회원관리 차원에서 실적보고 서식에서 독립시켰다. 즉, 이 회원카드에 의해 향후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다른 회원을 확대시키는 데 기본 홍보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表 III-3〉 푸드뱅크 會員카드

지역:	Food Bank 會員카드		작성 : 1998. 8.
작성기관	(Tel :                    )		확인 가능한 부분만 기재
〈기탁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연 락 처	Tel :	Fax :	업체규모
업 체 종 크	제조가공회사, 슈퍼, 재래시장, 농수축산물점, 제과점, 급식소, 농장, (                    )	취 품 급 목	
〈회원된 동기〉			
최 초 접 촉 방 법·반 응			
회 원 유 치 성 공 요 인			
〈기탁내용〉			
기탁품목		수송방법	상온, 냉장, 냉동, (    )
기탁물량		수송책임	
기탁이유		보관방법	
기탁주기		수혜반응	
기탁시간		불량여부	
수혜대상			

라) 寄託食品 管理臺帳

푸드뱅크 운영 중의 한 가지 목표는 기탁받은 식품의 빠르고 공정한 분배이며, 절대 상업화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기탁자에게는 기탁량에 준하는 稅制減免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런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탁식품에 관한 정리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表 III-4> 사랑의 食品 管理臺帳

사랑의 식품 관리대장

<기탁접수: 김정색 글씨, 식품수령 : 청색글씨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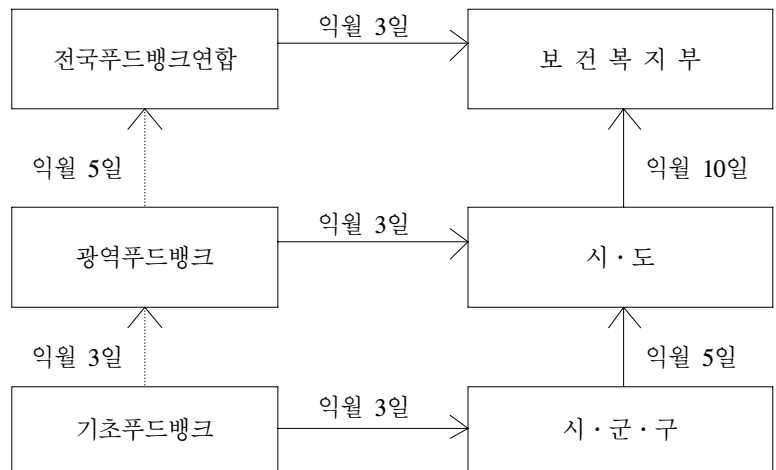
구 분	일자/시간	기탁 또는 수령자	전 화	식품명	물 량	환산가액 (천원)	유효기간 (상태)	식 품 소 재	수 송 책 임
기 탁 *김정색	9. 30	기린산업	382-7829	소세지	10박스	100	10.5	수인동	회사
	12:00				30박스	400	10.2		
수 령 *청 색	10. 1	모자원	383-1112	소세지	5박스	50			회사
	10:00	복지관	392-1111	소세지	5박스	50			회사
	11:00	재활원	393-1000	햄	15박스	200			재활원
	10. 2	무료급식	393-1001	햄	15박스	200			재활원
10:00									
기 탁 *김정색									
수 령 *청 색									

- 주: 1. 기탁접수내용은 김정글씨로 작성하고, 그 하단에 식품수령내용은 청색글씨로 작성할 것.  
 2. 다른 기탁자의 기탁이 전 기탁자의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경우 식품 수령자란을 적당히 띄워두고 기탁접수내용을 작성할 것.  
 3. 기탁접수받은 푸드뱅크가 상급 푸드뱅크로 분배요청을 하거나 동급 또는 하급 푸드뱅크로 분배한 경우에는 최초 기탁접수받은 푸드뱅크가 분배결과를 취합하여 관리대장을 기록(이중 계상방지 목적임).

### 나. 地域別 實績

각 푸드뱅크는 월별로 사업실적을 관련 기관인 각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基礎, 廣域, 그리고 全國 푸드뱅크를 통하는 보고 받는 체계와 시·군·구 및 각 시·도를 통해 보고 받는 이원화된 체계를 갖게 된다. 이런 보고 체계의 흐름도는 [그림 II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III-1] 푸드뱅크의 報告體系



#### 1) 月別 實績

<表 III-5>에는 지역별 푸드뱅크의 월별 운영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지역별로 사업실적을 비교해 보면, 기탁건수면에서는 대구 푸드뱅크가 10월 현재 1,89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산, 서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탁금액면에서는 서울 푸드뱅크가 7억 5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 푸드뱅크가 寄託件數는 대구 푸드뱅크보다 적는데 寄託金額은 많은 것은 대부분 식품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 대량물량이 서울 푸드뱅크로 기탁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과천은 5월부터 사업실적을 경기도와 함께 공동으로 보고하고 있어 사업실적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表 III-5〉 푸드뱅크 示範事業의 地域別·月別 實績 (단위: 건수, 천원)

구분		누 계		서울		과천		대구		부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월	월분	318	82,342	15	50,907	89	10,910	162	17,438	26	2,477
	누계	318	82,342	15	50,907	89	10,910	162	17,438	26	2,477
3월	월분	456	49,346	44	24,421	185	17,036	202	6,676	124	14,316
	누계	774	131,688	59	75,328	274	27,946	364	24,114	150	16,793
4월	월분	559	67,470	83	9,056	227	46,725	199	9,960	185	37,963
	누계	1,333	199,158	142	84,384	501	74,671	563	34,064	335	54,756
5월	월분	1,251	236,692	45	45,336	-	-	139	104,368	212	15,195
	누계	2,584	435,850	187	129,720	-	-	702	138,432	547	69,951
6월	월분	1,094	397,933	23	281,586	-	-	163	4,559	201	29,670
	누계	3,678	833,783	210	411,306	-	-	865	142,991	748	99,621
7월	월분	1,360	122,623	14	52,187	-	-	273	9,495	226	20,990
	누계	5,038	956,406	224	463,493	-	-	1,138	152,486	974	120,611
8월	월분	938	167,812	17	33,743	-	-	206	34,689	182	39,689
	누계	5,976	1,124,218	241	497,236	-	-	1,343	187,175	1,156	160,300
9월	월분	1,356	303,448	80	85,961	-	-	273	42,008	284	34,840
	누계	7,396	1,431,991	321	583,197	-	-	1,616	229,183	1,440	195,140
10월	월분	2,125	556,296	98	171,055	-	-	275	18,650	277	18,574
	누계	9,521	1,988,287	419	754,252	-	-	1,891	247,833	1,717	213,714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1.

## 2) 寄託會員

<表 III-6>에는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기탁회원 현황을 살펴보면 製菓店이 457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團體給食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표 III-7>에 제시된 기탁식품 실적과 연관이 되는 데 품목별 기탁식품 중 건수가 가장 많은 식품이 빵·간편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表 III-6> 푸드뱅크의 寄託會員 現況(1~10月分)

구 분	전체	식품	제래	슈퍼	농축수	제과점	급식소	농장	기타
계	1,632	252	48	146	144	457	317	6	262
전 국	4	4	0	0	0	0	0	0	0
서 울	211	47	6	21	7	73	15	1	41
부 산	203	18	12	12	11	86	43	0	21
대 구	89	22	1	16	7	26	11	0	6
인 천	26	12	0	4	1	3	4	0	2
광 주	35	9	2	0	6	9	4	0	5
대 전	82	17	0	3	4	29	10	0	19
울 산	67	6	1	9	4	20	10	0	17
경 기	172	19	4	18	20	23	45	0	43
강 원	131	14	0	4	1	88	21	0	3
충 북	85	8	0	4	7	11	10	1	44
충 남	10	5	0	0	0	2	2	0	1
전 북	12	5	0	1	3	3	0	0	0
전 남	52	14	1	2	4	11	12	3	5
경 북	112	15	8	9	3	22	31	1	23
경 남	341	37	13	43	66	51	99	0	32
제 주	0	0	0	0	0	0	0	0	0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1.

제과점과 집단급식소, 그리고 식품업체의 순으로 기탁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순으로 기탁량도 정비례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과점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P업체와 K업체의 기탁실적이 두드러지며, 각 푸드뱅크가 소재한 지역의 소규모 지역 제과점들도 다른 업종, 업태에 비해 기탁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양사들이 근무하는 集團給食所<sup>1)</sup>의 남은 食材料 및 調理된 食品의 기탁도 기탁식품의 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일반 식품 접객업소의 기탁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겠다.

조리된 식품의 기탁은 관할 푸드뱅크에 기탁하기 보다는 집단급식소나 食品接客業所에서 지정된 일, 시간, 장소에서 무료급식의 형태로 수혜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문화상 조리된 식품류는 국물이 많으며, 조리된 상태에서 음식이 섞였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관능적으로 시식하기에는 부적당하며, 음식을 종류별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기나 운송수단이 다른 加工食品類에 비해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表 III-6>에 나타난 1~10월분 기탁회원 실적을 살펴보면 5월 이후 푸드뱅크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기탁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푸드뱅크 사업의 전국 확대 실시의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寄託食品

<表 III-7>에는 각 푸드뱅크에 기탁된 식품을 食品類別로 분류하여 건수와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분류기준이 된 식품류는 여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관공서,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 중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말함.

러 가지 기탁식품 중 가장 기탁실적이 많은 몇 가지 식품류별로 대별한 것이다.

건수면에서는 빵·간편식이 3,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면에서는 통조림·가공식품의 806,973천원이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건수면에서는 대구가 1,89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면에서는 서울이 754,252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푸드뱅크 사업의 초기라서 인지 아직은 주로 가공식품류인 빵과 간편식의 기탁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조리된 식품류의 기탁은 저조한 실정이다.

〈表 III-7〉 푸드뱅크의 寄託食品 實績 現況(1~10月分)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전국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계	건수	5,838	6	419	1,805	1,891	1,717
	금액	1,521,217	241,347	754,252	64,071	247,833	213,714
통조림· 가공식품	건수	356	3	43	38	171	101
	금액	643,015	181,254	165,050	2,949	186,876	106,886
농수축산물	건수	960	2	146	214	418	180
	금액	223,832	16,317	135,223	15,451	12,933	43,908
빵·간편식	건수	2,634	0	127	291	1,025	1,191
	금액	484,093	0	395,128	8,902	34,358	45,705
조리된 식품	건수	1,711	1	68	1,171	235	236
	금액	124,681	43,776	22,203	32,111	9,780	16,811
기타	건수	177	0	35	91	42	9
	금액	45,596	0	36,648	4,658	3,886	404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1.

#### 4) 寄託品の活用

〈表 III-8〉에는 기탁된 식품의 분배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푸드뱅크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여성복지과와 女性福祉施設인 관계로 분배대상도 여성복지시설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10월의 확대 실시 이후 점차 지역과 대상이 확대하면서 고르게 분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탁물량이 많을 경우 관외지역에도 분배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II-8> 寄託物品 分配 實績(1~10月分)

(단위: 개)

구 분	합계	관 내		관 외
		여성시설	기타시설	
계	8,516	3,305	3,067	2,144
서울	506	147	182	177
부산	1,619	1,534	55	30
대구	1,700	1,246	284	170
인천	59	1	58	0
광주	0	0	0	0
대전	442	23	274	145
울산	237	0	230	7
경기	773	1	759	13
강원	29	15	14	0
충북	605	1	604	0
충남	0	0	0	0
전북	0	0	0	0
전남	0	0	0	0
경북	329	249	80	0
경남	2,217	88	527	1,602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1.

<表 III-8>에 이와 같은 현황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8,516건의 분배 중에 관내의 여성시설에 3,305건이 분배되고, 기타시설에 3,067건이 각각 분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외지역도 2,144건이 분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기탁물량이 많아 管外地域으로 분배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원칙에 비추어 바

람직하나 輸送費나 식품의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는 가능한 관내 기초나 단위 푸드뱅크가 많이 설치되어 관내에서 분배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 5) 弘報活動

<表 III-9>에는 푸드뱅크의 홍보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表 III-9>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껏 푸드뱅크에 대한 弘報活動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성사율이나 실패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푸드뱅크에 관한 홍보를 성공 가능한 업체들만 찾아다니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외국과 같은 자발적인 홍보 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시범지역의 홍보활동은 주로 面談이나 訪問에 의존하고 있으며, 홍보 활동 방법은 공무원이나 시설직원 단독, 관·민합동, 서한전달 그리고 설명회 양식 등으로 수행되고 있다. 아직은 푸드뱅크와 관련된 시설직원보다는 관주도형 공무원에 의한 홍보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 하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사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으로 총 2,798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서울로 2,282건으로 이들 두 지역의 성사건수가 총 성사건수 9,932건의 약 51%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실패건수면에서 볼 때 서울은 실패 건수가 1건도 없는 반면, 부산은 1,834건이나 되어 서울의 弘報實績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서울 푸드뱅크는 홍보를 하지 않은 채 기탁의사가 있는 업체들만 상대로 기탁물량을 접수한 것에 지나지 않아 부산과 같이 성사와 실패가 같이 많은 지역의 홍보활동 및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홍보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表 III-9> 푸드뱅크 弘報實績 現況(1~9月分)

(단위: 건)

구분	합계		면담·방문									
	성사	실패	공무원		시설직원		관·민합동		서한전달		설명회	
			성사	실패	성사	실패	성사	실패	성사	실패	성사	실패
계	9,932	4,104	1,663	1,389	395	249	430	97	7,237	2,282	207	87
전국	1	0	0	0	1	0	0	0	0	0	0	0
서울	2,282	1	4	0	3	0	4	1	2,269	0	2	0
부산	2,798	1,834	1,085	1,020	50	29	48	14	1,611	771	4	0
대구	251	272	25	10	23	46	34	3	154	212	15	1
인천	354	126	0	0	56	40	0	0	298	86	0	0
광주	26	289	4	42	17	6	0	0	5	241	0	0
대전	113	166	45	73	7	0	31	8	27	85	3	0
울산	432	189	41	55	46	0	105	44	156	39	84	51
경기	118	160	32	40	59	21	0	3	23	87	4	9
강원	46	140	11	6	4	0	0	0	11	108	20	26
충북	1,208	6	8	0	19	0	30	6	1,149	0	2	0
충남	27	78	0	0	18	60	0	0	9	18	0	0
전북	14	0	0	0	0	0	14	0	0	0	0	0
전남	491	26	20	0	78	2	30	12	359	12	4	0
경북	319	252	13	24	2	43	78	6	226	179	0	0
경남	1,452	565	375	119	12	2	56	0	940	444	69	0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1.

6) 地域特性

서울 푸드뱅크만이 受惠者와 寄託者를 연결시켜주는 전형적인 외국 의 푸드뱅크 형태를 가지나, 그 외 대구, 부산, 과천은 기존 업무에다 푸드뱅크 업무를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表 III-10>에는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현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시범사업 실적은 1월부터 8월 까지의 실적이다.

각 시범지역에 시범사업 운영비로 340만원씩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되었으며, 관련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인력은 기존의 것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범사업 지역별로 시범사업 실시후 푸드뱅크 사업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서울 푸드뱅크의 경우 인력과 독립된 사무실, 부산 푸드뱅크는 車輛維持費, 대구 푸드뱅크는 人力(운전기사)와 최소한의 운영비, 그리고 과천 푸드뱅크는 무료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대형운반용 주방기기의 구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II-10〉 各 示範地域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과천
전담인력	1명	없음	없음	없음
시 설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장 비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사업	선도보호	모자원	모자원	양로원
운영예산	340만원	340만원	340만원	없음
자원봉사자	없음	없음	없음	있음
홍보주체	보건복지부	시·푸드뱅크	시·푸드뱅크	없음
필요사항	인력, 사무실	차량유지비	인력(운전기사), 운영비	대형운반용 주방기기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1.

#### 가) 서울 푸드뱅크

서울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한 모든 대기업 식품업체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어 기탁건수는 419건으로 부산 푸드뱅크의 1,717건, 대구 푸드뱅크의 1,891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도 기탁금액은 754,252천 원으로 부산과 대구 푸드뱅크보다 많아 전체 시범 푸드뱅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푸드뱅크는 시범사업 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직할기관으로서 푸드뱅크 中央本部의 역할을 사실상 해왔다. 다른 시범지역의 푸드뱅크

크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여 자체 지역사업만을 실시한 반면 서울 푸드뱅크는 사무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해 주고 대량의 寄託品은 부산, 대구, 과천 등 다른 푸드뱅크에도 많은 양을 분배하고 있다.

6월에는 용산역에서 사랑의 식품나누기 캠페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9월 16일에도 역시 용산역에서 푸드뱅크 전용전화인 『1377』의 개통에 즈음하여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품을 분배하는 공개행사도 실시한 바 있다.

서울 푸드뱅크는 운영 실적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탁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은 대량물량에 의존하고 기탁회원 확보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나 복지시설의 지역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차원의 매스컴 홍보효과가 작용하여 일반의 인지도를 높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 푸드뱅크는 기존의 복지시설에 푸드뱅크 사업이 투입되지 않아서 시범사업 운영상 가장 결핍된 것이 많은 지역이었다. 우선 擔當人力이 전담인력 1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전용 사무실도 없고, 또한 대량물량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保管倉庫, 전용차량이 없어 사실상 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탁품 수령을 위한 담당인력의 부재 등으로 더 많은 기탁품의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과 같은 독자적인 홍보사업의 전개는 현재 상황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단편적인 홍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어떤 형태의 조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은 푸드뱅크이다.

#### 나) 果川 푸드뱅크

과천 푸드뱅크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위치한 지역에 시범사업 현황을 가깝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 養老院을 운영하고 있는 구세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형태이다. 푸드뱅크 사업이 들어오기 전부터 매주 금요일 점심에 영등포역에서 무료 급식과 양로원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푸드뱅크 사업의 투입으로 인해 기탁된 식품은 두 가지 기존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한다.

주요 기탁회원들은 과천 전화국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식품과 남은 食材料를 주로 기탁하고 있으며, 인근 제과점, 슈퍼 등의 소규모 지역업체에서 판매 후 남은 식품들을 직접 기탁하는 업체가 많다고 한다.

기존 구세군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내에 푸드뱅크 사업이 투입되어 필요한 人力, 場所, 施設 및 裝備 등이 당장은 필요없으나 조리된 국이나 음식을 받아들수 있는 커다란 調理容器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 다) 大邱 푸드뱅크

대구 푸드뱅크는 기독교 母子院이 중심이 되어 푸드뱅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시와 관할 구청의 협조가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사업실적도 가장 뛰어나다. 우선 시의 담당과의 협조로 대형 냉장고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기탁자에게는 시장의 감사편지를 띄우고 있고, 또한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내나 역에 설치된 電光板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전국에 걸쳐 실시되고 있지만 P회사의 제과, 제빵의 매

일기탁제도가 사실상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다른 지역의 푸드뱅크보다는 홍보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푸드뱅크의 독자적인 홍보라기보다는 市와 區廳의 협조가 크다 하겠다. 푸드뱅크 사업에 시나 구 등 관련 정부단체의 도움이 너무 커서 자칫 관 주도형이거나 관의존형 사업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 라) 釜山 푸드뱅크

부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장 푸드뱅크다운 시범사업이 운영하고 있다. 즉, 푸드뱅크 사업 담당자와 관련 부산시 및 구의 사업에 대한 상호 노력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푸드뱅크 사업 실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탁회원의 총수가 203회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으며, 또한 寄託會員의 유형도 가장 다양하여 푸드뱅크 사업이 부산이란 지역사회 전반에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부산 푸드뱅크는 현재 푸드뱅크장을 관내 9개 모자원이 1개월씩 순번제로 수행하고 있어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관련 복지시설장들의 경험에 의한 의견 수렴이 잘 되고 있다.

또한 부산 푸드뱅크는 향후 식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국 등과 같이 生活用品을 취급하는 실질적인 푸드뱅크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 확대시켜야 할 사업 운영계획이라 하겠다.

## 2. 擴大事業 實績

9월부터 전국 56개 지역에 푸드뱅크를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기 시

작한 푸드뱅크 전국 네트워크의 명단은 부록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1월부터 시작했던 4개 지역의 시범 푸드뱅크 사업은 나름대로 지역적 여건에 맞는 특성을 살리며 운영되었고, 56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 푸드뱅크도 관련 시·도의 지원을 받아 10월부터 푸드뱅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운영기간이 10월달 1개월간이라 실적 분석상 다소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하겠다.

#### 가. 廣域 푸드뱅크

9월부터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푸드뱅크 사업이 확대 실시된 56개 지역은 시범지역과는 달리 1개월간만의 운영실적이 있다. 광역푸드뱅크의 현황을 살펴보면 <表 Ⅲ-11, Ⅲ-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국 16개 지역의 광역 푸드뱅크 사업 중 7개 주요 푸드뱅크를 중심으로 10월 실적을 살펴본 결과가 <表 Ⅲ-11>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푸드뱅크는 출범 초기이므로 전용 및 전담 시설, 장비나 인력 등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복지시설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투입하여 병행 실시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 푸드뱅크 사업 전용은 아니지만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은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기존 복지업무와 푸드뱅크 업무가 혼재하여 본연의 복지사업은 물론 푸드뱅크 사업도 業務 效率이 떨어지는 폐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지역마다 달라 지원받는 푸드뱅크와 받지 못하는 푸드뱅크가 지역에 따라 각각 상존하고 있다. 최초 시범사업 지역은 400만원씩 示範事業費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확대 실시 지역의 푸드뱅크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전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豫算支援은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II-11>에 나타난 10월의 소요경비는 전화설치비, 기본 장비비, 1개월 최소 운영비 등이 포함된 액수이며 지역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 시설을 살펴보면 冷蔵車가 구비된 지역은 한 곳도 없고 냉장고도 기존 복지사업에서 사용한 것이나 개인용으로 마련한 정도이다. 물론 가격이 몇 천만원대를 호가하며 운영비도 비싼 냉장차를 각 광역 푸드뱅크가 각 푸드뱅크별로 다 구비하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 하지만 광역별로 기탁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차의 共同 購買 및 使用을 위한 관련 방안의 마련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表 III-11> 廣域 푸드뱅크의 現況

(단위: 명, 천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강릉	인천	청주
시설 직원수	6	4	5	4	4	10	9
푸드뱅크 담당자수	3	1	5	4	4	3	2
공공근로인력자수	1	0	1	0	3	1	0
자원봉사자수	0	0	0	0	0	0	0
냉장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냉장고	2대	없음	1대	1대	없음	없음	없음
일반차량	1대	기존	1대	기존	1대	1대	1대
총 운영예산	4,000	4,000	4,000	0	0	0	0
시·도 지원예산	0	0	0	2,100	0	0	0
중앙정부 지원예산	4,000	4,000	4,000	0	0	0	0
10월 소요경비	123	500	222	310	0	1,114	0
회원수	293	199	73	36	23	32	32
관련시설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1.

자원봉사자의 참여 정도, 관할 지역에 소재한 식품 관련업체들의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설치된 푸드뱅크와 확대 실시한 지역의 푸드뱅크간에 차이가 존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범사업이라는 弘報效果에 의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운영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광역 푸드뱅크라서인지 運營 方法에 따라 푸드뱅크별 운영 실적은 기초 푸드뱅크와는 달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基礎 푸드뱅크

전국의 40개 지역에 설치된 기초 푸드뱅크 중 주요 푸드뱅크의 운영 실적이 10월 실적을 중심으로 <表 III-12>에 제시되어 있다.

<表 III-12> 基礎 푸드뱅크의 現況

(단위: 명, 천원)

구분	제천	구미	영덕	울진	안동	의성	원주	춘천
시설 직원수	1	10	8	4	5	12	6	9
푸드뱅크 담당자수	1	1	1	1	2	1	1	3
공공근로인력자수	1	0	0	0	0	0	3	0
자원봉사자수	0	0	0	0	0	0	0	0
냉장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냉장고	없음	1대	1대	없음	없음	1대	1대	없음
일반차량	기존	1대	1대	1대	기존	1대	1대	1대
총 운영예산	0	0	0	0	0	0	0	0
시·군·구 지원예산	0	4,000	180,000	0	0	0	0	0
중앙정부 지원예산	0	0	0	0	0	0	0	0
10월 소요경비	0	4,000	180,000	10,780	0	0	80,000	0
회원수	19	9	0	0	20	1	3	12
관련시설	기존	의자(100) 식탁(40)	의자(50) 식탁(12)	기존	기존	의자(96) 식탁(24)	식탁(16)	기존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1.

기초 푸드뱅크의 시설 직원수를 살펴보면, 의성이 12명, 구미가 10명, 그리고 춘천이 9명 순인데 푸드뱅크 담당자수는 춘천이 3명, 안동이 2명,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명씩으로 사업에 투입된 인력 수를

고려해 볼 때 기존 복지사업에 비해 푸드뱅크 사업의 중요도가 아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수가 1명도 없는 것은 향후 푸드뱅크 운영 人力需給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를 확대시켜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기초 푸드뱅크도 광역 푸드뱅크와 마찬가지로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기존의 福祉事業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1377』특수전화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푸드뱅크 사업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 푸드뱅크들의 운영 현황은 거의 대동소이하여, 운영비, 전담인력, 푸드뱅크 전용 차량, 冷蔵·冷凍 關聯 施設 및 裝備, 자원봉사인력 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들도 아직은 사업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나 투명한 사명감보다는 비록 정상제품은 아니지만 食品支援이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더 의미를 두는 이들에 대한 의식교육이나 사업 운영상의 절차, 분배, 그리고 食品安全에 대한 鑑別 등에 대한 중앙차원의 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겠다.

### 3. 運營上의 問題點

시범사업 실시 후 현재 푸드뱅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問題點이라기보다 푸드뱅크 사업을 정착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사업실적과 우편조사에 의한 현황파악에 의거하여 도출해 보면 크게 조직체계와 담당인력, 운영예산,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유인책, 안전성, 그리고 관련 법 등 운영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 분야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組織體系

### 1) 總括組織의 未洽

총괄조직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여성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사업 확대도 여성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表 I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푸드뱅크를 통해 기탁된 기탁품을 분배받는 사회복지시설수도 편중된 형편이다. 또한 사회복지단체내에서 그 비중이 약한 여성복지단체가 총괄조직인 전국 푸드뱅크연합을 담당하다 보니 代表性이 약하여 조직의 위상이 전국,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를 총괄하는 중앙단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총괄조직의 위상저하는 弘報 및 寄託誘導 등의 중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이어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면서 兒童·老人施設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복지관의 참여도 늘어나 이와 같은 한계는 점점 극복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2) 組織間의 連繫性 未洽

푸드뱅크에 기탁되는 물품은 우선적으로 기탁자가 소속해 있는 지역에 설치된 푸드뱅크에 우선 기탁하고, 분배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나, 소요량을 초과할시 가장 인근 지역의 다른 푸드뱅크에 분배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조직되어야 하는데 푸드뱅크와 기탁자간의 지역적인 연결, 분배 및 재분배를 위한 지역단위 조직체계가 아직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즉, 중앙 및 지역단위의 푸드뱅크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망안에서 근거리 원칙에 의해 기탁자와 수혜자를 원활히 연결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푸드뱅크 소재지역을 넘어서는 寄託과 受惠가 이루어져 수송비의 증가,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나. 運營體系

1) 擔當人力

기존 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시범 및 확대사업을 실시하다보니 각 푸드뱅크마다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즉, 기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1인을 지정하여 푸드뱅크 사업을 시키고 있어 기존의 복지사업과 푸드뱅크 사업 모두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겠으나 여유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자원을 동원함으로써 福祉事業을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

2) 運營豫算

푸드뱅크 운영상 無費用이 운영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전담인력 인건비, 관리비, 차량유지비, 냉장고 등의 운영비, 그리고 수송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과 같이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현금 기탁도 되지 않고 있어 運營豫算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홍보비와 최저 관리비용은 공공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施設·裝備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도 필요하다. 즉,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 기탁된 식품을 보관할 장소, 기탁식품을 수령하고 분배할 차량,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냉장고 등 低溫流通裝備, 나아가 푸드뱅크간 정보제공 및 분배망 설치를 위한 컴퓨터 등이 필요하다. 사무실, 차량 등 기존의 복지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탁된 食品의 安全性 확보를 위해서는 각 푸드뱅크별로 대형 냉장고의 구비는 필요하다.

#### 4) 受惠者

푸드뱅크를 창구로 하여 기탁자와 수혜자간의 물품 접수와 분배가 이루어진다. 현재 기탁식품의 최종수혜자는 주로 시설에 입소된 사람들로 되어 있어 외국의 경우처럼 시설 수용자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貧困者 등 개인에게도 受惠의 혜택을 넓혀가야겠다. 현재 전국확대사업이 되면서 무료급식소나 수재민 수용소, 獨居老人, 소년소녀 가장 등에 일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 5) 弘報活動

홍보부족과 기탁회원 모집활동 부진으로 기탁량이 미미하다. 특히 대량의 물량을 기탁할 수 있는 식품 대기업, 대량 단체급식 실시 기관장들의 최고 경영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며, 유관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대한영양사회, 한국조리사회 등의 측면 지원이 부진한 것도 전적으로 弘報와 유인책 미비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탁품의 輸送 및 包裝 등 과외의 노력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기탁식품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강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寄託者에게 부여되는 5%의 稅金 減免혜택 이외에도 최고의 기탁자에게 부여하는 명예도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 6) 寄託食品 管理의 安全性

기탁된 식품은 안전하게 수혜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기탁식품 대부분의 신선도가 정상제품에 비해 떨어짐을 감안할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과 수송, 보관시 적정환경을 유지토록 주의하여야 한다. 즉, 식품을 다룰 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보관시는 冷凍·冷蔵·常溫 등 적정온도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장비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보다 식품의 상태가 변질되지 않는 상태에서 즉시 輸送, 分配 및 給食하는 체제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7) 情報網 構築

기존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체 컴퓨터는 마련되어 있지만 컴퓨터간의 通信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컴퓨터 통신을 통한 寄託과 分配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푸드뱅크간 기탁품의 분배, 재고품 관리와 관련서식의 정리 및 월별실적 보고 등 푸드뱅크 업무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情報網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컴퓨터 정보망 이전에 전화에 의한 연락체계 만이라도 갖추는 것이 優先課題일 것이다. 전화 연락망에는 기탁자와 수혜자는 물론 푸드뱅크의 위치, 특성, 담당자, 인원 등이 자세히 기재된 명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내 복지지도도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 다. 關聯 法 體系

##### 1) 寄託者

선의의 기탁자에 의해 기탁된 물품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는 안전 사고로부터 기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法規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기탁된 물품에 의해 食中毒 등 사고 발생시 기탁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관련 법의 부재로 기탁될 수 있는 많은 식품들이 食品資源으로 재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寄託物品

기탁된 식품은 소정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기탁품의 상품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분배를 위해 기탁품 분배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탁식품의 流通期限에 관한 제도 개선으로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물품이 많아져 푸드뱅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겠다. 현재 食品衛生法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전량 폐기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우리나라 푸드뱅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이 <表 III-13>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고려한다면 푸드뱅크의 早期 定着化 模型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表 III-13〉 우리나라 푸드뱅크 事業現況과 問題點

구 분		내 용	
행정	기획	- 1998년 4개 시범지역 및 시범 외 지역	
	조직 체계	중앙	-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가 역할수행(1998~1999) - 여성복지단체연합회 중심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과천
	운영 체계	수혜자	- 여성복지단체연합회 소속의 여성 및 어린이가 주요 대상
		기탁자	-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종의 제과점 - 기탁시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세금감면혜택 제공
	자원	물적자원	- 기존 복지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를 사용 -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시설 및 장비 미투입 - 기탁식품 유형에 따른 수거·운송·보관 장비가 없음. - 기탁식품은 가공식품류(빵, 통조림, 조미류) 위주
		인적자원	-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담인력이 없음. - 자원봉사자들의 비정규인력의 투입은 없음.
	법	- 식품위생법에 기탁식품위해사고에 관한 규정없음. - 운영비 충당을 위한 기부금 모집이 불허	
위생안전	- 냉장고, 냉동차, 보관창고 등의 시설 및 장비가 없음. - 수거자에 의한 관능검사만으로 한계		
재정	재원	민간	
		정부	- 공공의 사회복지시설의 참여로 정부보조금이 재원
사회 문화	사회적합의	- 기탁자, 수혜자 등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회적 지지의견 수렴 미약	
	홍보	- 보건복지부 주관의 언론매체가 효과적 - 유관단체의 공문에 의한 홍보효과는 미약	
정보	정보체계화	- 푸드뱅크간 네트워크 구축 미비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1.

## IV. 外國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 各國의 運營 現況

#### 가. 美國

##### 1) 背景

1967년 Soup Kitchen의 자원봉사자인 John Van Hengel이 기탁된 식품의 保管과 分配를 위해 식품전용창고를 마련하면서부터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6년 세금개혁법령(Tax Reform Act)과 정부지원을 통한 Second Harvest 푸드뱅크라는 전국 조직이 형성됨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푸드뱅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公共과 民間部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탁자, 수혜자들에게 관련된 법의 제정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기존 시설과 자원봉사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푸드뱅크는 시카고시에 총 본부를 두고 하와이 2개소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약 200개소가 있으며, 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단체가 Second Harvest 푸드뱅크이다. Second Harvest 푸드뱅크는 푸드뱅크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Second Harvest 푸드뱅크에 기탁된 물품을 인근 푸드뱅크에 분배하고, 食品業體와 푸드뱅크를 직접 연결해주는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 이 Second Harvest 푸드뱅크는 구세군, 적십자사 다음으로 미국내에서는 큰 慈善團體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이 단체의 효율성은 99.7%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경제호황과 낮은 失業率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감소되

고 있지 않은데 1996년 미국 통계국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1989년에는 미국 전 가구의 13.1%가 貧困家口로 조사되었으며 1995년에는 0.6% 포인트가 증가한 13.7%로 나타났다.

그리고 食品供給 현황이 조사된 1996년 미국 농무성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연 34백만명이 충분한 식품공급을 받지 못해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전체가구의 약 12%가 飲食供給이 충분치 못한 빈곤가정으로 조사되었다(〈表 IV-1〉 참조). 현재는 이런 절대 貧困者 증가에 대한 福祉惠澤의 대안으로 푸드뱅크를 통한 구호서비스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表 IV-1〉 食品 安全(Food Secure)의 區分

구 분 <sup>1)</sup>	%	가구수(백만)	비 고
Food Secure	88	100.0	
Food Insecure	12	7.8	굶주림 없음
		4.2	약간 및 심한 굶주림 <sup>2)</sup>
		11.9	

註: 1)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기준

2) 자녀를 가진 여성이 가장인 가계와 시내에 거주하는 흑인과 서반어 사용의 가계가 대부분임.

資料: U.S. Bureau of the Census, 1995년 미국 Current Population Survey

또한 미국정부의 福祉豫算 감축에 따른 Food Stamp Safety Net 감소로 Food Stamp가 1997년과 2002년 사이에 2천8백만불이 감소(2천4 백만 파운드 상당의 음식량)됨으로써 이 감소부분을 푸드뱅크를 포함하는 민간부문이 대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지금까지 정부나 민간의 자선단체가 굶주리고 있는 미국인의 필요량을 채우지 못하였고, 둘째 이러한 Food Stamp의 감소량을 푸드

뱅크에서 담당하려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배량의 425%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푸드뱅크의 分配量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어 푸드뱅크의 기탁량이 향후 6년간 10% 증가하여도 굶주리고 있는 미국인의 1/3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역사적으로 정부의 빈민에 대한 지원 축소가 상대적으로 개인의 기탁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慈善團體가 추구하는 서비스를 연방 또는 地方政府가 호의적으로 지원할 때 개인적 기탁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2) 組織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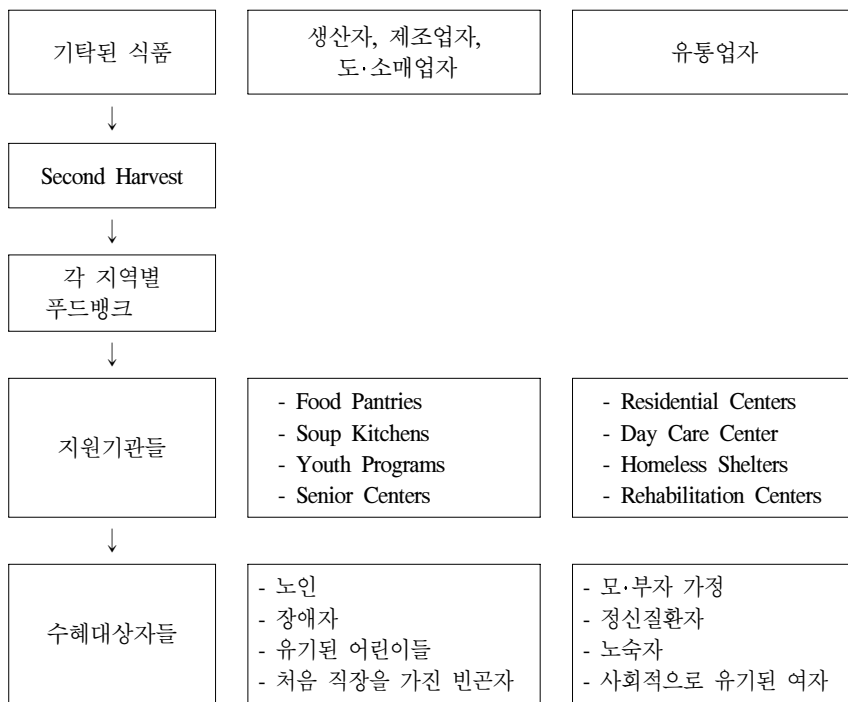
미국의 푸드뱅크 조직체계는 [그림 IV-1]과 같다. 전국에 총 200개의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뱅크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푸드뱅크의 업무를 총괄하는 Second Harvest 푸드뱅크라는 지역별 총괄조직이 있으며, 시카고시에 미국 푸드뱅크 총 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시카고시에 있는 푸드뱅크의 총 본부는 푸드뱅크에 관한 연구사업을 포함한 弘報, 情報收集 등 총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조직체계하에서 식품을 포함한 생활용품들이 기탁되는 채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生産者와 製造者에 의해 생산된 식품 중 기탁될 식품들과 유통업체에서 기탁될 식품들에 관한 정보가 Second Harvest 푸드뱅크를 통해 총괄적으로 수집된 후 기탁업체와 가장 인접해 있는 각 지역별 푸드뱅크를 연계시켜 기탁하도록 유도한다. 물론 Second Harvest 푸드뱅크도 기탁을 받아 인근 푸드뱅크에게도 기탁품을 분배하고 있다.

각 지역별 푸드뱅크는 기탁된 食品들을 지원하는 관할 푸드뱅크 지원 복지기관에 분배하며 각 복지기관은 관리 수혜자를 대상으로 기탁

품의 일정량을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도가 [그림 IV-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1] 美國 푸드뱅크의 組織體系



資料: Second Harvest 인터넷 홈페이지

가) Second Harvest 푸드뱅크

Second Harvest 푸드뱅크는 푸드뱅크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근 푸드뱅크의 총괄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매년 천만 파운드의 조리된 飮食과 食料品 및 생활용품을 기탁받고 있으며 또한 각 식품업체에 기탁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200개의 산하 푸드뱅크에 식품제

조업체 및 정부가 마련해 놓은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지침』에 의해 지역별의 人口 및 貧困 統計에 근거를 두어 선정된 수혜대상자들에게 필요량을 분배한다.

이 조직은 금전과 식품, 비누 등 생활용품과 푸드뱅크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裝備, 運營技法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을 기탁받는다. 이 조직의 주요 세 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푸드뱅크에 식품이나 물품을 기탁하는 업체가 받게 되는 혜택의 종류를 홍보하고, 둘째는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고, 셋째는 기탁업체 중 기탁실적이 탁월한 업체를 선정하여 『이달의 자선가』로 널리 홍보하는 일이다.

#### 나) 푸드뱅크

Second Harvest 푸드뱅크의 산하 협력기관으로 미국 전지역을 걸쳐서 200개소가 있으며 이들 푸드뱅크는 크게 6개 地域別로 광역화되어 있다. 즉, Northeast 地域의 푸드뱅크, Midwest 地域의 푸드뱅크, Northern Plains 지역의 푸드뱅크, Southwest 地域의 푸드뱅크, Southeast 地域의 푸드뱅크, 그리고 Pacific 地域의 푸드뱅크이다.

#### 다) 支援機關

푸드뱅크로부터 지원을 받아 94,000종의 給食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0,193개의 지역소재 자선기관이 해당된다. 푸드뱅크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기관들은 <表 IV-2>에 나타난 바와 같와 Food Pantries, Day Care Center, Soup Kitchen, Homeless Shelter, Senior Centers Youth Program, Rehabilitation Centers 등과 같이 다양하다.

〈表 IV-2〉 푸드뱅크가 支援하는 福祉機關 數

기 관 별	기관수(개소)
총 계	50,193
Food Pantries	22,076
Residential Shelters	6,065
Day Care Centers	3,469
Youth Programs	3,158
Soup Kitchens	2,865
Senior Centers	2,424
Rehabilitation Centers	2,015
Homeless Shelters	1,763
Others	6,358

資料: Second Harvest 인터넷 홈페이지

### 3) 運營現況

#### 가) 寄託

미국의 푸드뱅크는 現金, 食品, 生活用品 등 모든 것을 다 기탁받고 있다. 돈은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에 의한 기탁도 가능하며, 식품이외 에도 비누,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도 기탁받아 수혜대상자들에게 분 배하고 있다. 기탁받은 돈은 푸드뱅크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Federal Surplus Property Donation Act에 의해 정부의 남은 裝備와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Act를 기반으로 국방성에서 천만불 정 도의 시식 가능한 식품이 푸드뱅크에 기탁되고 있다.

〈表 IV-3〉 年度別 寄附食品量<sup>3)</sup>

(단위: 백만 파운드)

구 분	중앙단위 기탁량	총 기탁량
1991	185.7	516.6
1992	243.6	616.9
1993	250.8	679.2
1994	257.2	755.9
1995	285.7	811.3

註: 1) 중앙단위의 기탁량은 주별 담당 푸드뱅크를 의미함.

2) 정부가 지원하는 상업적인 프로그램이나 구입한 생산품 프로그램은 기부에 포함되지 않음.

資料: Second Harvest 인터넷 홈페이지

## 나) 分配

기탁된 식품들은 <表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배된다. 즉 200개소의 푸드뱅크를 통해 50,193의 기관에 지원되고 그리고 각 지원대상기관별 최종 수혜대상자는 26,000,000명이다.

〈表 IV-4〉 1996年 分配 現況

종 류	수
푸드뱅크(개소)	200
지원대상기관(개소)	50,193
수혜대상자(명)	26,000,000

資料: Second Harvest 인터넷 홈페이지

## 다) 受惠對象者

푸드뱅크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분배하는 수혜대상자는 <表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1995년 현재 미국의 人口調査에 의하면 26,00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외에 영구적



인 빈곤자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수혜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1997년에는 2천백만명이 Second Harvest 푸드뱅크를 통하여 긴급 食糧援助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8백만명의 어린이와 3백5십만명의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 라) 運營 프로그램

Second Harvest 푸드뱅크를 중심으로 연간 백만파운드의 폐기되는 食品을 재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푸드뱅크에 기탁을 유도하기 위한 Innovative Program, Tax Benefit, Good Samaritan 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Innovativ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식품업체가 푸드뱅크에 모든 종류의 제품을 편하게 기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乾燥, 冷蔵, 冷凍食品類, 개인이 생산한 식품류, 상표를 붙이지 않았거나 잘못된 商標가 붙어 판매할 수 없는 제품류, 홍보용 제품류, 소매판매가 불가능한 대량포장의 상품류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탁받고 분배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부적인 세 가지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Harvest Scan Program

푸드뱅크에 기탁된 물품의 檢索方法으로서 흠집난 통조림과 포장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할 수 없는 식품류 등을 대상으로 식품고유의 바코드에 의해 조사하고 검색하여 재생센터에 보낼 것과 再生作業이 필요없이 바로 푸드뱅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분하는 프로그

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檢索結果는 기탁 물품의 해당 제조업체에 통보해 주어 향후 제조업체 운영에 도움을 준다.

### ② Fresh Food Initiative Program

기탁된 식품중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生鮮類, 肉類, 가금류, 식당에서 조리된 식품, 乳製品類, 빵류 등을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프로그램으로 푸드뱅크에 기탁되는 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 ③ Value-Added Processing(VAP) Program

푸드뱅크에 기탁된 제품들의 최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공공정을 거치는 프로그램이다. 즉, 기탁된 식품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므로 이러한 기탁품의 保存期間을 연장할 수 있도록 포장, 재포장하는 작업이다. 즉,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수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대포장용 제품을 소포장하는 등 재포장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신선한 채소류를 포장하여 보존기간을 늘리고, Cargill사에서 대포장 형태로 기부된 쌀을 Riviana Foods회사의 도움을 받아 소포장하며, S. C. Johnson에서 기부 받은 샴푸는 소매형태의 크기로 再包裝하여 지원기관에 제공된다.

## (2) Tax Benefit

푸드뱅크가 기탁자에게 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 혜택은 在庫品 保管을 위한 보관비용과 폐기에 소요되는 폐기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고, 두번째 혜택은 푸드뱅크에 기탁할 물품의 수송을 푸드뱅크가 담당하여 기탁업체의 수송비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 혜택은 제조업체가 납세해야 하는 稅金의 일부를 감면받도록 해주는 것이다.

### (3) Good Samaritan

월단위로 어느 기탁자(주로 식품제조업체)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푸드뱅크에 얼마나 많은 식품을 기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이 달의 慈善家』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탁대상 품목은 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 Basic American Food Program에 의하면 조리된 음식, 식품뿐만 아니라 전국의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식품들의 기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뱅크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적 지원, 재난구제 지원, 委託業務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도 포함되어 자선가 선정기준이 된다.

### (4) Pioneer Human Services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으로 식품구매, 도매가격으로 식품분배, 기탁품의 재포장사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寄託品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재생센터로 보내질 물품을 선별하기 위한 기탁품 보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4) 運營費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은 기탁된 現金으로 충당된다. 뉴욕주의 한 푸드뱅크는 수혜자들에게 10Kg 한 포장당 1불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운영비용에 보태고 있으나, 푸드뱅크의 운영 원칙은 기본적으로 無費用, 無報酬이다.

## 5) 關聯 法 및 制度

### 가) 關聯 法

미국의 푸드뱅크와 관련한 법으로는 Tax Reform Act, Good Samaritan Act(Bill Emerson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과 Federal Surplus Property Donation Act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Good Samaritan Act

- ① 이 법의 목적은 기탁된 물건에 대한 기탁자의 법적인 책임과 발생될 수 있는 부담을 방지해 주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푸드뱅크는 GMA나 FMI에서 개발한 엄격하고 표준화된 倉庫 運營 技法의 사용, 올바른 貯藏 및 管理節次, 완전한 식품 생산과 기탁처 추적 및 식품회수 장치, 최적의 식품 수집 및 분배 등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도 寄託 契約(Donation Contract)과 훌륭한 자선가(Good Samaritan)를 통하여 기탁자를 보호하고 있다.
- ② 법령의 적용은 네 가지 경우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탁자가 非營利機關에 기부할 때만 적용되며, 둘째 기탁자들은 기탁품에 의해 수혜자에게 사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한 민사상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셋째 기탁자와 관련 담당자는 책임에 따른 조사를 받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流通期間이 경과된 제품을 기탁받은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2) Federal Surplus Property Donation Act

1997년 10월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으로

公共部門의 잉여량을 푸드뱅크에 기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 법률은 트럭, 업무기기, 컴퓨터, 창고용품 등과 같은 연방정부 자산 중 초과분을 전국의 푸드뱅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천만불 상당의 시식 가능한 飮食이 연방관련위원회에서 제출한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Act를 근거로 빈곤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기탁되고 있다.
- ② 연방정부가 쓰지 않거나 중복된 연간 8천만불 상당의 물품을 푸드뱅크나 유관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權限이 상기 法律의 승인으로 가능하여졌다.

### (3) Tax Reform Act

정상적인 商去來로 소비자에게 판매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품(Ordinary Income Property)을 기탁하였을 시 稅金減免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

1976년에 제정된 이 법에 의해 공공자선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체는 더욱 많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法人體가 자선단체에 정상제품을 기부할때는 Interl Revenue Code(IRC)에 따른 정상가로 판매가능한 제품의 기부에 해당된다. 또한 기탁법인체가 IRC 1221절 (1)과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자선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할시 IRC 170절 (e) (3)조항에 의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상가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Ordinary Income Property)의 세금감면은 다음의 <表 IV-5>에 제시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表 IV-5〉 税金減免 内譯

구 분	가격(U.S. dollar)
판매가	4
원 가	1
판매이익 3불	3
판매이익의 1/2	1.5
공제액은 원가의 2배를 넘지 않음.	2
최종 판매이익은 1불로 제한됨.	1
6기부에 의한 세금 공제액 <sup>1)</sup>	2

註: 기부에 의한 세금공제액=원가+최종 판매이익

資料: Second Harvest 인터넷 홈페이지

#### 나) 關聯 制度

푸드뱅크와 관련한 제도로는 주로 관련 법에 근거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푸드뱅크에 기탁한 團體 및 個人에게 부과된 또 다른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숙박료: San Antonio Marriott Rivercenter과 Hampton Inn에서는 숙박료의 15%를 할인해 주고 있다.
- ② 항공료: 5~10%를 할인해 준다.
- ③ 관광비용: 10%를 할인해 준다.

#### 나. 캐나다

##### 1) 背景

전세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삭감 경향은 캐나다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여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하에 福祉增進을 구축하

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81년 처음으로 푸드뱅크가 캐나다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公共社會福祉體系 약화의 대안으로 푸드뱅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모든 복지문제의 해결 방법이 민간주도의 市場經濟的 해결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면서, 푸드뱅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한 自然災害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긴급 식량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 사례를 비추어봐도 푸드뱅크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表 IV-6>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92년까지 11년 동안에 빈곤층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9%인 1,304,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失業手當 수혜자수도 1981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0년 동안에 5.1%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빈곤가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1992년을 기준으로 女性家長이 단독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빈곤률이 다른형태의 빈곤가정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6> 캐나다의 貧困 現況

구 분		년 도	
빈곤 해당자		1981	3,624,000명
		1992	4,320,000명
실업률		1971	6.2%
		1981	7.5%
		1991	10.3%
		1992	11.3%
실업수당 수혜자		1981	720,280명
		1991	1,385,710명
빈곤율	성 인	1992	17.4%(여성)
			13.1%(남성)
	여성가장가구 부양	1992	62%

資料: Winnipeg Harvest 홈페이지(<http://www.Xpressnet.com/harvest/>)

이와 같이 사회보장의 기본요소인 衣食住를 충족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증가가 푸드뱅크같은 구호기관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 2) 關聯 法

### 가) Canada Assistance Plan(CAP)

빈곤계층에게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CAP와 관련한 지원범위, 지원기준 설정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관련업무를 국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하면 聯邦政府和 州政府은 각 주정부 기준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분담을 50%대 150%의 비율로 분담하여 담당토록하고 있다.

CAP의 제정 목적은 캐나다 국민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공공복지수준 향상의 실현에 있다. 여기서 CAP에 근거한 地方政府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첫번째 업무는 기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정부차원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飲食, 住居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福祉欲求에 기초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과 자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업무를 세분해 보면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豫算을 받아 첫째로 공공복지체계의 정립, 둘째 국가적인 社會保障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Canada Assistance Plan

- ① 빈곤기준선과 수혜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불충분한 복지예산 비율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연방정부의 책임 및 역할은 충분하지 못하다.
- ② 연방정부가 최적의 사회복지서비스 운영범위와 종류는 어떤 것이고 또한 적절한 사회복지 支拂額의 범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정부가 제공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자체 판단에만 의존하여 캐나다 CAP의 費用分擔에 따른 복지예산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각 주정부의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적정하게 할당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③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연방정부에게는 사회복지나 사회적 권리의 국가적 표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미미한 사회적 압력만이 가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社會福祉나 基本權利를 제공해야 할 의무나 영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국민들에게 제공할 福祉惠澤의 수준을 정할 제도적 권리를 지방정부에게 양도하고 하고 더 이상 연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푸드뱅크의 활동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3) 組織

가) 中央組織

푸드뱅크의 중앙조직으로는 캐나다 푸드뱅크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Food Bank)가 존재하며, <表 IV-7>에 따르면 지역 푸드뱅크의 수는 1980년의 1개에서 1992년 8월까지 캐나다 푸드뱅크 협회에 등록된 푸드뱅크는 342개로 12년 동안에 341개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Julia Bass 캐나다 푸드뱅크 협회장은(Executive Director, Canadian Association of Food Banks) 푸드뱅크는 퀘벡시와 동부 온타리오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단순한 식품구호프로그램 차원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캐나다인의 最低生活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Scotiabank 그룹과 같이 막대한 액수인 \$200,000의 기부금을 지원하는 몇몇 대표적인 後援者들과 그외의 기탁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도움과 지원으로 필요한 양의 食品供給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表 IV-7> 캐나다 푸드뱅크의 運營 現況

구 분	년 도	
최초 설립년도	1980	1개소
	1992	342개소
수혜자수 (연간 최소 1번이용)	1989	1.4백만명
	1990	1.8백만명
	1991	2.1백만명
	1992	2.4백만명
어린이 이용자수	1996	40%

資料: Winnipeg Harvest 홈페이지(<http://www.Xpressnet.com/harvest/>)

전국적인 푸드뱅크의 중앙조직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 푸드뱅크 협회의 기본목적은 다른 국가와 거의 마찬가지로 食品과 寄託金을 기탁받아, 푸드뱅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社會貧困層에 음식 및 식품을 분배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내

에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현실적이며 지속적인 福祉事業을 추진하는 데 두고 있다.

나) 受惠者數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은 분배받는 수혜자수는 1989년의 1.4백만명에서 1992년은 2.4백만명으로 4년 기간 동안에 백만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수혜대상자 중에 어린이 수혜자가 4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캐나다 社會福祉體系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 地域組織

캐나다 푸드뱅크의 지역 조직은 10개주에 편성되어 있다. 10개주는 Manitoba주, Quebec주, New Brunswick주, Nova Scotia주, Prince Edward Island주, New Foundland주, British Columbia주, Alberta주, Saskatchewan주, Ontario주이다.

캐나다 10개 주를 대표할 수 있는 組織, 運營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Manitoba주의 Winnipeg Harvest 푸드뱅크와 British Columbia주 빅토리아시에 소재한 Capital Health 푸드뱅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캐나다 푸드뱅크의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地域組織의 運營 現況

가) Manitoba州의 Winnipeg Harvest 푸드뱅크

(1) 背景

1984년 Lee Newton은 Winnipeg지역에서 해마다 총 생산량의 약20%의 식품이 廢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푸드뱅크를 설립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5년간의 경제발전추진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조직으로 설립하였으나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失業과 삭감되는 복지예산에 의해 오히려 푸드뱅크를 통한 지원은 증가되고 있었다.

Manitoba주의 Winnipeg Harvest 푸드뱅크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푸드뱅크로 빈곤과 굶주림은 지역사회내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Winnipeg지역의 Winnipeg Harvest 푸드뱅크는 적극적인 자원봉사들의 지원업무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수의 自願奉仕者가 푸드뱅크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빈곤과 굶주림은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自願奉仕를 할 때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表 IV-8>에 제시된 바와 같이 Winnipeg지역의 푸드뱅크는 1980년대에는 매월 1,800가구에서 1998년은 매월 11,000가구를 지원하여 8년 동안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가 9,200가구로 증가하였다.

<表 IV-8> Winnipeg 푸드뱅크의 受惠家口對象 現況

년 도	수혜가구 대상수
1980년대 중반	매월 1,800가구
1998년	매월 11,000가구

資料: Winnipeg Harvest 홈페이지(<http://www.Xpressnet.com/harvest/>)

## (2) 人力

푸드뱅크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常勤職의 책임자 1명, 8명의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근 정규직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① 총괄적인 푸드뱅크 업무

마니토바주 푸드뱅크 지원기관들과의 연계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식품기탁원, 關聯 情報 및 資源을 공유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 예상될 수 있는 위기시에 푸드뱅크 수혜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단체와의 연계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창구역할을 통하여 푸드뱅크에게 보다 많은 협력업체의 확보를 도모한다.

② 정보수집 및 통신업무

통신업무로서는 福祉, 失業, 貧困 및 굶주림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정보수집은 정보가 믿을만한 사회적 근거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이 있는 주제인지, 사회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지를 감안하여 수행된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사교단체, 학교, 교회 및 지역사회공동체를 관장하고 있는 언론매체, 정부, 유관단체, 다른 푸드뱅크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③ 법인체 조정 업무

업체에서 기탁되는 식품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또한 위니페그지역의 푸드뱅크 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인체 즉, 製造業體와 個人을 대상으로 寄託金과 寄託品目을 발굴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④ 운영업무

운영업무로서 푸드뱅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총괄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푸드뱅크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寄託과 分配에 관한 안전하고 적절한 시간과 절차를 마련하며, 또한 식

품분배에 따른 준비와 수송이 효율적이도록 인적자원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 ⑤ 등록과 자문업무

등록과 자문업무는 추가적인 식품분배를 요청하는 개인의 전화접수를 받고, 受惠者를 인근의 푸드뱅크에 등록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한 사람은 인터뷰를 통하여 정규 수혜자로 등록시키고 식품꾸러미를 분배하고 각종 필요한 情報를 제공한다.

#### ⑥ 연구업무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빈곤과 굶주림 등의 관련 분야까지 研究範圍를 확장하고 있다.

#### ⑦ 특별행사 개최

1997년에는 175회의 특별행사가 열렸으며 이 행사는 푸드뱅크에 기탁할 식품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식품수집운동, 음악회, 골프시합, 가두시장, 야간극장 및 회의 등의 각종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 내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특별행사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를 유도하는 업무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自願奉仕者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행정 및 안내업무: 저장창고 운영이나 기탁품의 수송에 관한 업무와 사무보조 및 안내업무를 담당한다.
- 푸드뱅크 지원기관 관련업무: 운영 실적에 관한 통계수치 산출과 관련된 업무, 워크숍 등의 개최와 푸드뱅크의 업무 향상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소식지를 발간한다.

- 통신업무: 홍보부서에 참여하여 언론매체에 게재된 빈곤과 굶주림에 관련 기사를 발췌하고 弘報物을 생산한다.
- 식품 기탁의 중개업무: 농부, 농장주, 식품제조업체의 대표자를 방문하여 기탁의 유치 및 푸드뱅크와의 중계 역할을 한다. 또한 기탁된 飮食 및 食品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기탁자에게 정보제공의 역할도 수행한다.
- 인적자원의 관리 업무: 모든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 및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정리, 저녁이나 주말에 푸드뱅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업무 지도를 하며, 그외에 營養教育, 직업안내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 연구 및 정보 관련 업무: 도서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련 도서목록 정리 보조, 빈곤과 굶주림에 관한 연구 참여 및 지원, 통계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 특별행사 관련 업무: 특별행사의 계획, 참여 및 운영을 한다. 또한 特別行事的 참여자와 후원자에 대한 감사문 전달 등의 추후 업무도 하고 있다.
- 창고운영 업무: 食品 分類와 포장업무의 보조, 지역 협력단체에서 요청한 품목의 확인작업, 차량을 통한 기탁식품의 수집과 배달 및 표준화에 따른 貯藏倉庫의 관리와 청소를 수행한다.

### (3) 運營 프로그램

#### ① Equal Start 프로그램

Equal Start는 Villa Rosa회사, Crisis Pregnancy, Pregnancy Distress와 위니페그 푸드뱅크의 협력사업이다. “인간적 교류를 통한 치유”라는 구호아래 미래의 부모역할과 成人生活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

고 있는 십대들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모든 諮問相談者는 현재와 과거에 사회서비스 단체를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로서 이들 또한 사회안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과 전문화된 지식은 사회에서의 격려, 지도와 우정을 필요로 하는 십대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② Grow a Row 프로그램

1886년에 감자를 많이 수확한 농부가 剩餘量을 폐기처리하는 대신에 푸드뱅크에 기탁함으로 시작되어, 주위의 농부들에게로 확산되어 푸드뱅크에 기탁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表 IV-9>에 따른 연도별 식품의 증가량은 다음과 같다.

Grow a Row 프로그램을 통한 기탁량은 1987년에 8만7천파운드였고, 1994년까지 계속적으로 기탁량은 증가하여 1994년의 농산물의 기부량은 26만5천파운드로 1987년 대비 3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V-9> 年度別 食品 寄託量

연 도	기부량(pounds)
1987	87,000
1988	15,000
1989	100,000
1990	110,000
1991	125,000
1992	200,000
1993	35,000
1994	265,000
총계	937,000

資料: Winnipeg Harvest 홈페이지(<http://www.Xpressnet.com/harvest/>)



③ Shelf Help 프로그램

Shelf Help 프로그램은 빈곤과 굶주림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食量支援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해결하는 노력에 동참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개인과 집단은 일년에 1주일을 선택하여 高營養食의 가공건조음식을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것이다. 즉, 참가자가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빈곤 층 가구들 및 푸드뱅크 종사자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 하겠다.

기탁하는 식품종류로는 영유아의 離乳食 및 보조식, 땅콩버터, 통조림된 과일, 채소, 육류, 생선, 스투, 콩제품, 파스타, 마카로니와 치즈 등이다. 그러나 거론된 식품들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선택하여 기탁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탁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사항이지 강제적 사항은 아니다.

(4) 貧困現況

Winnipeg 地域의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부조는 10년 동안에(1981~1991년) 약 500% 증가하였다. 또한 1982~1992년 동안의 도시거주실업자는 41%로 증가하였다.

이중에서 單獨父母가 가장인 가구는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혜대상자는 도시 실업자와 단독부모가 家長인 가구들로 이런 빈곤가구들 자녀들의 빈곤과 굶주림은 당연한 처사이다. 또한 <表 IV-10>을 살펴보면 1996년의 푸드뱅크의 수혜자 중에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제공된 식품량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0〉 Winnipeg 地域の 貧困

구 분		연 도	
시의 지원		1981~1982년	6,000명
		1991~1992년	30,000명
도시거주 실업자		1982~1992년	41% 증가
푸드뱅크	수집 및 분배량	1995년	4.4백만파운드
	수혜자	1996년	매월 33,000명
	수혜 가정		매월 14,000가정

資料: Winnipeg Harvest 홈페이지(<http://www.Xpressnet.com/harvest/>)

#### 나) 빅토리아시에 소재한 Capital Health 푸드뱅크

Capital Health 지역의 푸드뱅크는 5개소이며, 전체적인 공공서비스 안전網에서 푸드뱅크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한국적인 푸드뱅크 모델을 개발하는 데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 복지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Capital Health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서비스 ② 교육 및 훈련 ③ 고용/자원봉사/군대 ④ 환경 ⑤ 가족생활/부모역할/임신 ⑥ 재정지원/예산/사업 ⑦ 식품과 음식 ⑧ 정부/행정 ⑨ 보건 ⑩ 주거 ⑪ 이민/다민족사회 ⑫ 정보/도서관/언론 ⑬ 법률/자문 ⑭ 휴양/예술/문화 ⑮ 운송/여행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같이 15가지 부문중 푸드뱅크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공공서비스 ⑦ 식품과 음식에 해당되며 정규적인 푸드뱅크 사업이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Capital Health 지역 푸드뱅크의 특성은 Mustard Seed Church 푸드뱅크를 살펴보면 설명이 될 것이다. 나머지 4개 푸드뱅크는 푸드뱅크 運營時間 및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만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表 IV-11> Mustard Seed Church 푸드뱅크 運營現況

구 분	내 용
주 소	625 Queens Ave.
도 시	빅토리아
주(Province)	BC
우편번호	V8T 1L9
전화번호	385-0512
팩스번호	385-0430
시 간	사 무 실: 오전 9시~오후 4시(월~금) Food Bank: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30분(월, 수, 금)
프로그램	식품꾸러미 제공, 의류은행, outreach program, 운송서비스제공, 상담, 노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푸드뱅크 수혜대상자 서비스, 매월 2회 교도소 복음서비스
비 용	없음
조직형태	비영리 기관
지 역	Capital Health 지역

資料: Capital Health Region의 인터넷 홈페이지

<表 IV-11>을 통하여 Mustard Seed Church 푸드뱅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실의 운영은 주 5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며, 푸드뱅크는 주 3일이 운영되며 월요일, 수요일과 금요일이다. 푸드뱅크에서 제공하는 주요 업무 및 프로그램은 식품의 收集 및 分配라는 고유업무이외에도 의류은행, Outreach Program, 職業訓練과 교도소 복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푸드뱅크의 활동영역이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조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Food Shopping and Meals Assistance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Food Store Shopping and Delivery Services: 필요한 식품을 공동으로 購買 및 配達을 실시한다.

- ② **Community Kitchen:** 비영리 프로그램으로서 낮은 소득의 개인과 가정이 한달에 한번 모여서 음식에 대한 調理 計劃과 조리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 ③ **Meals of Wheels:** 월별로 순번제에 의해 식사를 마련한다.
- ④ **Community Meal Program:** 노인들에게 점심과 저녁식사를 유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점심: \$2.35/1인당, 저녁: \$5.25/해당 지역의 거주자, \$6.25/다른 지역의 거주자로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 ⑤ **Sharing Kitchens:** 3~6명의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食品購入費用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조리한 다양한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다. 유럽聯合

##### 1) 背景

유럽공동체에서는 공동체에 소속된 국가의 平均賃金보다도 낮은 6억명의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 6억명 중에서 350만명에서 400만명 정도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주민 100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치라 한다. 이와 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빈곤자들은 균형적인 食品攝取를 못해 신체 및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굶주림과 廢棄物이 상호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따라 푸드뱅크는 농부·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잉여식품을 수집하여 이것을 자선단체에 기증함으로써 빈곤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푸드뱅크의 설립 목적은 식품폐기물 감소이며, 食品衛生에서 요구되는 사항의 엄격한 적용하에서 음식을 통한 健康回復을 추구한다.

또한 계속되는 貧困者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9개국 이 푸드뱅크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1988년에는 푸드뱅크의 유럽연합(European Federation of Food Banks)이 설립되어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 2) 組織

유럽은 유럽연합의 중앙조직이라 할 수 있는 푸드뱅크 유럽 총 본부가 브뤼셀에 있고 각국별 푸드뱅크의 地方組織이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각국의 푸드뱅크를 대표하는 중앙단위 조직이 설립되어 있다. 유럽에는 총 141개소의 푸드뱅크가 있으며, 131개소가 현재 활동 중이다.

### 가) 유럽聯合 本部

유럽연합 본부는 9개국인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가 참여하여 1988년에 발족되어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 본부의 주요 업무는 첫째는 유럽에 소개한 多國籍 製造業體에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일정한 양을 기탁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둘째는 각 나라가 푸드뱅크와 관련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로비활동을 대행하며, 셋째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기탁자를 개발하여 얻어진 寄託品 및 寄附金을 수집 및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나) 國家別 푸드뱅크

유럽에는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9개국에 아직 유럽연합에 참여

하지 않은 체코를 포함한 10개국에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활동 중이다. 각국별로 조직체계가 다소 다르다. 즉, 지역별 푸드뱅크를 관장하는 중앙조직이 있는 국가는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로 이들의 중앙조직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 스페인은 따로 독립적인 中央組織이 없어 리스본 푸드뱅크가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은 전국에 걸쳐 1개의 푸드뱅크만 갖고 있다.

중앙조직은 큰 규모의 大企業, 대량생산하는 업체, 다국적 기업 등을 상대로 기탁을 유도하는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조직이라 할 수 있는 지방 푸드뱅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表 IV-12>에는 각국별 푸드뱅크의 수와 활동수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국별 푸드뱅크의 1997년 운영 현황은 <附表 IV-12>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表 IV-12> 1997年 各國別 푸드뱅크數와 活動數

(단위: 개소)

국가	설립된 푸드뱅크 수	1997년 현재 활동 중인 푸드뱅크 수
벨기에	9	9
스페인	27	23
프랑스	72	71
그리스	1	1
아일랜드	1	1
이탈리아	16	15
폴란드	8	7
포르투갈	5	2
체코슬로바키아	1	1
영국	1	1
총 계	141	131

資料: 유럽연합, 『1997년 푸드뱅크 운영 현황』, 1998. 6. 3.

### 3) 運營 現況

유럽연합에 설치된 푸드뱅크는 국립공공기관(National Public Authorities)들의 지원과 함께 剩餘 農産物을 지원받아 이중 일부를 가공 식품화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식품 수집에 매년 참가함으로써 푸드뱅크의 음식나누기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푸드뱅크는 寄託과 分配의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기탁과 분배의 모든 과정은 무료로 실시된다.

#### 가) 寄託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모든 식품은 기탁품에 의존하며, 그들 스스로 식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기탁되는 食品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잉여 농산물, 식품제조부문의 초과 생산량과 먹을 수 있으나 상품화될 수 없는 제품들, 둘째는 飲食店에서 조리하여 팔다 남은 음식물, 셋째는 공공기관,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 기탁한 남은 조리식품과 食材料들이며, 마지막으로 슈퍼마켓 등 판매업체에서 팔다 남은 식품들이다.

푸드뱅크를 통한 기탁실적을 살펴보면 1996년 72,000톤, 1997년에는 26% 증가된 91,000톤을 기탁받았는데, 이는 포르투갈과 폴란드, 그리고 스페인 푸드뱅크에 기탁된 물품이 증가된데 기인한다. <表 IV-13>에 각 국가별 푸드뱅크의 기탁량이 제시되어 있다.

〈表 IV-13〉 年度別 푸드뱅크 數와 寄託量 變化 推移

(단위: 개소, 톤)

국가	활동중인 푸드뱅크수			기탁량		
	1995	1996	1997	1995	1996	1997
벨기에	9	9	9	4,018	5,565	5,813
스페인	8	22	23	3,641	6,069	8,832
프랑스	66	69	71	35,319	42,758	50,621
그리스	0	1	1	0	182	293
아일랜드	1	1	1	440	470	479
이탈리아	10	14	15	4,070	13,447	18,306
폴란드	1	2	7	549	713	1,090
포르투갈	1	2	2	1,706	3,156	5,359
체코슬로바키아			1	-	-	166
영국	1	1	1	9	23	28
총 계	97	121	131	49,752	72,383	90,987

資料: 유럽연합, 『1997년 푸드뱅크 운영 현황』, 1998. 6. 3.

<表 IV-14>에는 각국별 푸드뱅크에 기탁된 물품의 기탁기관별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表 IV-14〉 寄託團體別 寄託量

국가	반품	유럽연합	제조업체	유통업체	개인	총계
벨기에	111	1,587	3,361	-	754	5,813
스페인	2,450	469	486	44	8	8,832
프랑스	5,897	10,282	18,022	7,963	8,457	50,621
그리스	-	-	184	102	7	293
아일랜드	-	30	449	-	-	479
이탈리아	-	9,950	6,117	513	1,726	18,306
폴란드	-	826	155	109	-	1,090
포르투갈	534	931	2,852	122	920	5,359
체코	-	-	132	34	-	166
영국	-	6	22	-	-	28
총계	8,992	24,072	31,780	8,887	11,872	90,987
1996 실적	8,359	24,095	25,981	7,024	6,924	72,383

資料: 유럽연합, 『1997년 푸드뱅크 운영 현황』, 1998. 6. 3.



나) 分配

푸드뱅크는 수혜자들에게 식품을 無料로 나누어 주며, 또한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선단체와 연결망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음식의 무료공급은 각 푸드뱅크들과 慈善團體間에 상호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이를 실천할 최소한의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있다.

기탁된 식품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無料給食과 식재료, 그리고 간식거리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또 푸드뱅크에서 관할 지역내의 자선단체에게 福祉食堂(Welfare Restaurants)에서의 식사제공, 무료급식소(Small Reception Points)에서의 나눔의 빵(Share Bread)이라는 이름으로 식사제공, 식품꾸러미(Food Parcels)의 세 가지 형태로 식품을 보조하고 있다.

〈表 IV-15〉 1997年 各國別 分配 現況

구 분	푸드 뱅크 수	분배량 (톤)	지원 기관수 (개소)	푸드 뱅크당 지원 기관수	수혜 대상자수 (명)	푸드 뱅크당 수혜자수 (명)	1인당 분배량 (Kg)
벨기에	9	5,481	627	70	80,260	8,918	68
스페인	23	8,832	2,154	94	266,226	11,575	33
프랑스	71	48,675	3,819	54	770,795	10,856	63
그리스	1	258	70	70	5,500	5,500	47
아일랜드	1	484	66	66	11,000	11,000	44
이탈리아	15	17,656	2,862	191	499,000	33,267	35
폴란드	7	1,094	373	53	46000	6,571	24
포르투갈	2	5,059	393	197	56520	28,260	90
체코	1	164	29	29	3,000	3,000	55
영국	1	28	53	53	-	0	-
총계	131	87,731	10,446	80	1,738,301	13,269	50

資料: 유럽연합, 『1997년 푸드뱅크 운영 현황』, 1998. 6. 3.

1997년 분배실적을 살펴보면, 총 87,731톤의 기탁품을 10,446의 자원자단체에 분배하였으며, 이는 최종 1,738,301명의 수혜자에게 분배되었다. <表 IV-15>에는 각국별 분배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 다) 受惠 對象者

사회보장적 또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푸드뱅크에서 수집된 식품은 분배를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푸드뱅크는 孤兒院, 養老院 등과 같이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곳은 푸드뱅크를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4) 運營 人力

민간부문의 자원봉사자가 업무수행의 큰 역할을 한다.

<表 IV-16> 푸드뱅크 勤務人力의 報酬 現況(1997年)

(단위: 명)

구 분	무보수	월급	계약회사	총계
벨기에	110	0	0	110
스페인	112 (a)	0 (a)	0 (a)	112 (a)
프랑스	1,723	41	268	2,032
그리스	27	2	0	29
아일랜드	7	4	0	11
이탈리아	453	8	9	470
폴란드	24	14	0	38
포르투갈	115	14	0	129
체코	-	-	-	-
영국	2	1	0	3
총계	2,573 (a)	84 (a)	277 (a)	2,934 (a)

註: 계약회사에서 파견나온 인력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음.

資料: 유럽연합, 『1997년 푸드뱅크 운영 현황』, 1998. 6. 3.

푸드뱅크의 업무는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폭 넓은 연령층의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업무가 수행된다. 푸드뱅크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社會奉仕를 하는 공익요원이거나 현재는 失業狀態이지만 전에는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규 직원은 소수이며 수급량의 총괄 및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運營規定

기탁된 모든 식품은 저장 전과 저장시에 엄격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으며, 腐敗하기 쉬운 冷蔵·冷凍食品은 적정온도가 유지된 장소에 저장된다. 푸드뱅크는 식품의 운송·저장 및 유통과정중에 지켜야 할 食品衛生 協約을 준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신중하게 유관단체를 선정하여 運送 및 貯藏 業務를 맡기고 있다.

저장창고의 관리와 행정업무는 현재 식품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最新 管理技法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식품의 기탁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 6) 運營費用

푸드뱅크 운영의 양대 업무인 기탁과 분배에 관련된 업무는 무비용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필요한 여러 장비 및 기탁품의 수송도 自願奉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시설 및 장비 등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일부 시설유지비 및 정규 근무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寄附金에 의존하고 있다. 즉, 푸드뱅크에 관련 식품이나 생활용품등을 기탁할 수 없는 기관이 기부금 형태로 푸드뱅크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라. 프랑스

### 1) 背景

프랑스는 1984년에 파리에 처음 푸드뱅크가 설립된 이래 1998년 현재는 全國에 걸쳐 72개의 지역 푸드뱅크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는 71개 푸드뱅크가 활동 중에 있어 유럽내에 독일과 함께 푸드뱅크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는 푸드뱅크의 설립목적은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飮食의 浪費를 줄이고, 둘째는 빈곤자에게 사랑의 음식 나누기를 실천하여 셋째는 사람간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푸드뱅크의 주요 업무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식품을 기탁받아 분배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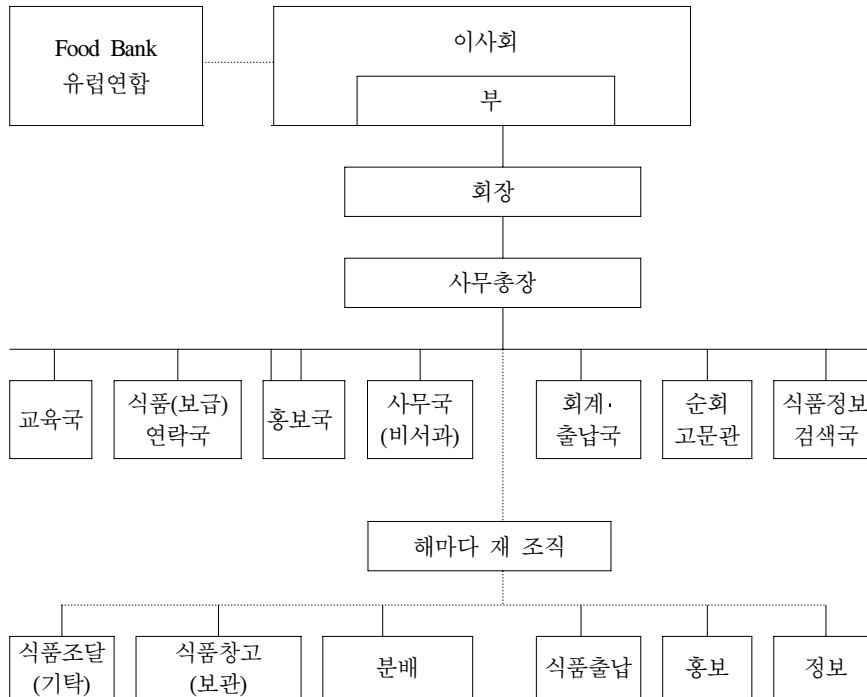
### 2) 組織

파리에 프랑스 전역에 있는 72개소의 푸드뱅크를 총괄하는 본부 이사회가 [그림 IV-2]와 같은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총 18~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과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총장은 각국의 책임자를 임명하게 된다. 중앙조직의 역할은 식품의 寄託, 保管, 分配에 따른 업무집행을 도우며 푸드뱅크의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식품의 보관, 출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무총장 산하에 구성된 식품의 기탁, 보관, 분배, 출납,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부서들은 해마다 새롭게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전지역 72개소의 푸드뱅크가 있으며, 71개소가 활동 중에 있다.

[그림 IV-2] 프랑스 푸드뱅크의 組織體系



資料: 유럽연합, 『1997년 푸드뱅크 운영 현황』, 1998. 6. 3.

### 3) 運營現況

푸드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푸드뱅크가 실시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식품제조업체, 농산물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공공시장의 잉여 농산물, 농부, 개인을 대상으로 식품의 기탁을 유도하는 일이고, 둘째는 專門人力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군용빵제조소장의 기술을 빌리고, 倉庫業에 종사하다 퇴직한 자를 활용하여 기탁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 창고보관, 정리, 저장, 수송, 군용빵 제조소를 운영하며 분배하여야 할 在庫食品의 목록을 작성하

여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는 분배업무로 푸드뱅크간 食品分配技術을 전수하고, 넷째는 식품의 出納業務로 기탁자의 세금계산서 비용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 보증하고, 출납원을 관리한다. 다섯째는 弘報活動으로 신문과 같은 인쇄물뿐만아니라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여 식품기탁을 홍보하며, 지방 푸드뱅크의 홍보활동도 도와준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업무는 푸드뱅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무보수로 각기 다른 技術을 갖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 가) 寄託

1997년 총 기탁량은 48,687톤으로 기탁기관별 기탁비율을 살펴보면, 식품업체가 총 기탁량의 36%를 점유하여 수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유럽연합에서 기탁한 양이 전체의 20%,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16%, 그리고 개인 기탁자가 12%를 나타냈다.

1997년 기탁된 기탁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과일 및 菜蔬類와 乳製品類가 각각 전체의 27%, 기타가 18%, 비스킷, 시리얼류가 13%, 조리된 음식이 7%, 설탕이 든 간식류가 4%, 그리고 식용유류가 4%로 나타났다.

#### 나) 勤務人力

프랑스 푸드뱅크의 특징은 푸드뱅크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자원봉사자들로 전공이 다양하여 식품 특성에 맞는 食品 保管法에 의한 食品 倉庫 運營, 냉장·냉동시설의 운영, 논리적인 사업 홍보 전개 등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수월히 수행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푸드뱅크는 Cold-Chain System(저온유통체계)의 발달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新鮮度 유지를 위하여 冷蔵 및 冷凍을 요하는 과일, 채소류 등의 제품을 푸드뱅크에서 취급하고 있다.

다) 關聯 法

1901년에 제정된 단체법에 근거하여 1985년 10월 4일 푸드뱅크에 관련된 『慈善團體法』이 제정되었으며, 다음 해인 1986년 9월 23일에 개정되었다.

마. 벨기에

식품자선활동기관인 Belgian Federation of Food Bank는 1986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9개의 푸드뱅크가 지역별로 설치되어 활동 중이다.

벨기에 푸드뱅크의 잉여식품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업체, 販賣業體, EU 잉여농산물 관리기구, 식품경매장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무료로 식품을 기탁받고 있으며, 기탁 받은 식품중 식품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기탁한 식품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식품들이다. 그러므로 푸드뱅크는 식품들을 기탁받을 때 衛生과 安全上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 확인하고 있다. 기탁된 품목에는 채소, 과일류와 같이 新鮮食品類도 있으나, 보관 및 운송 등의 문제가 있어 소량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탁받은 모든 식품은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모두 무료로 분배하며 직접 개인에게 分配 및 支援하지는 않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벨기에 내 626개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을 支援機關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푸드뱅크의 운영은 모두 민간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대부분 이루어지며 輸送裝備 등도 무료봉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가 불가능한 건물임대료, 냉장고 등 장비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일부 運營費는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푸드뱅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으며 벨기에 세법상 4만원 정도 이상 기부금은 조세감면처리를 받고 있어 현금 기탁자

의 기탁활동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푸드뱅크에 기탁된 식품 섭취자의 食中毒 發生 등 문제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식품의 안전문제에 대응하여 保險에 가입하고 있다. <表 IV-17>에는 최근 벨기에의 푸드뱅크 운영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表 IV-17> 벨기에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단위: 톤, 개소, 명)

연도	기탁량	지원사회복지시설	수혜자
1996	5,256	606	73,768
1997	5,750	626	77,114

資料: 유럽연합, 『1997년 푸드뱅크 운영 현황』, 1998. 6. 3.

## 바. 獨逸

### 1) 組織

독일은 地方分權化된 나라로 푸드뱅크도 이와 같이 지방분권화되어 있다. 즉, 중앙조직인 연방 푸드뱅크와 지역단위 조직인 90개의 지방 푸드뱅크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역할은 각기 다르다. 두 조직 모두 民間次元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 푸드뱅크는 대기업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食品寄託을 유도하는 일종의 로비활동을 수행하며, 지방 푸드뱅크는 관할 지역에 소재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기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2) 運營現況

독일의 푸드뱅크는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각 푸드뱅크별로 푸드



뱅크가 관장하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이 슈퍼마켓에서 社會貧困階層, 즉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수혜대상자에게 식품을 低價에 팔고 있다. 이렇게 푸드뱅크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목적은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계층이 사회빈곤층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물품 구입시 본인이 일정한 액수의 식품값을 지불하게 하여 수혜자들의 자존심을 최소한 지켜준다는 것이다.

이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食品價格은 매우 저가로 주변 다른 가장 싼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가격의 50% 수준으로 사실상 다른 슈퍼마켓 가격의 40% 정도라 한다. 가격이 싼 만큼 이용대상자들의 1일 購買量이 일정량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이 슈퍼마켓의 물건들은 모두 기탁받은 제품들로 流通期限이 지난 제품들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다.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이러한 슈퍼마켓은 각 도시마다 5~6개 정도가 운영되며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인 社會保障對象者는 전적으로 푸드뱅크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연방정부 차원의 빈곤지표를 기준으로 税金, 家族數, 所得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슈퍼마켓 이용카드가 지급된다. 슈퍼마켓 이용카드의 명칭은 “Table”로 도매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연방 정부나 주정부 모두 푸드뱅크의 식품기탁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식품기탁을 식품업체에 독려할시 기탁업체에 대해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료급식이 아닌 형태로서는 生活保護對象者에게 저가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과 정부가 연계되고 있다. 무료급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宗教團體나 자선단체에서 일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즉, 한국의 露宿者에 해당되는 사

람들이다.

### 3) 勤務人力

푸드뱅크에 근무하는 인력을 살펴보면, 정규 직원은 소수이며 민간 부문의 자원봉사자가 업무수행의 큰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를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軍隊에서 근무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를 하는 공익요원,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난하여 푸드뱅크를 통하여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신 푸드뱅크에서 自願奉仕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민간의 자원봉사자들이다. 이와 같이 민간부문의 인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푸드뱅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 4) 運營規程

푸드뱅크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일의 푸드뱅크는 부분적인 冷蔵·冷凍施設의 활용으로, 채소, 과일 등과 같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 포장되지 않은 식품,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들로 安全性 維持가 어려운 식품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즉, 식품이 외관상으로 파손되거나 흠집이 있는 것은 기탁받지 않는다. 또한 返品 또는 剩餘品의 기탁이 아니고 식품업체에서 인도주 의적 차원에서 매월 일정량의 精品을 기탁받아 이를 분배한다. 많은 식품의 기탁품목은 빵종류로서 유럽인의 주식이므로 많은 수의 제과점이 참여하며,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高蛋白質의 식품을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 日本

일본은 사실상 푸드뱅크란 제도가 없다. 단 福祉制度의 일환으로 한

정된 지역에서 無料給食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무료급식에 사용되는 식품류는 주로 라면류, 빵류, 과자(건빵)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에서 남은 음식을 사용한 적은 전혀 없고 전에는 민간단체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에서 햄버거, 도시락 등 일부 남은 음식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民間團體에서도 남은 음식을 무료급식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表 IV-18>에는 정부차원의 食品給食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 동경시내의 무료급식소는 우리나라의 무료급식소와 같은 개념으로 4년전인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동경시내 3개 구인 아라카구, 신주꾸구, 다이아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무료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품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시식이 가능하여도 남은 식품은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전혀 사용하지 않고 精品의 컵라면, 비스킷, 牛乳, 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주꾸주의 경우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구청 밖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약 500여 명의 집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는 구청 부속건물로 총 25평 정도의 크기로 주방이 10평, 食堂이 15평 정도이다. 부대시설로는 주방에는 컵라면에 사용할 뜨거운 물을 끓일 수 있는 주방시설과 식당에는 의자와 식탁이 5개 정도가 있다.

무료급식은 9시에 시작되지만 급식을 먹기 위하여 7시 30분 정도부터 관련자들이 줄을 서고 12시쯤에는 못먹는 사람없이 거의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정부차원에서 총 소요예산의 3/4는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1/4은 관련 시 및 구청에서 조달하고 있었으나 無料給食에 소요되는 豫算은 (동경)시와 관련구청이 5 : 5

의 비율로 할당하여 지원하고 있고, 신주꾸구청의 무료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년 1억3천만원 정도로 주로 飲食物(컵라면과 비스킷) 구입 대금과 물을 끓이기 위한 燃料費로 사용되고 있다.

〈表 IV-18〉 老宿者들의 食品供給對策 比較

시	생활빈곤자 적용 상황		
	적용	관의 대책	법의 보호 종류
동경시(야마다니구)	안함	법의 보호	무료 급식, 숙박, 의료, 교통비
동경시(신주꾸구)	안함	법의 보호	컵라면과 건빵, 목욕권, 의료
가와사카시	원칙없음		빵
요코하마시		53세 이상만 법외보호	빵, 교통비, 숙박
나고야시	안함		취직, 이사비
교토시	안함	빵과 우유 제공	교통비

무료급식에 참여하는 인력은 주로 담당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전용급식 건물이 있으므로 임대료가 따로 필요없는 실정이며,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소요되는 예산은 매우 적은 편으로 총 區廳豫算 중에서 무료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비율은 사실상 계산해본 적이 없는 형편이었다.

일본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 외에 민간단체에서도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및 간섭이 전혀 없는 관계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다.

신주꾸구내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2~3개소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집없는 사람들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性比를 살펴보면 女子는 거의 없어 500여명 중 약 1~2명 정도만이 여자이다.

노숙자들은 첨부한 카드를 적어 식권과 바꾸어 그날 그날 무료급식 시에 食券을 제출하고 공무원들은 적어낸 카드로 당일 급식실적을 계산하여 예산배정 등 無料給食을 실시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 2. 國家間 運營 比較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푸드뱅크 운영 현황을 근무인력, 운영비, 조직체계, 관련법 및 제도, 홍보전략, 시설 및 장비, 기탁 및 분배 등 크게 7가지로 구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결과 얻어진 示唆點은 우리나라 푸드뱅크 模型 開發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 분석결과 및 얻어진 시사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組織體系

각 국가마다 지역단위 푸드뱅크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중앙단위의 상위 조직이 있으며 下部構造로는 각 푸드뱅크가 지원하는 無料給食所, 孤兒院, 養老院 같은 복지시설단체가 있으며, 이 지원단체에서는 최종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관할 수혜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중앙단위의 조직은 대체로 그 나라를 대표하며 푸드뱅크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탁유도, 수집된 기탁품의 분배, 중앙단위에서는 弘報事業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총본부는 각국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多國籍 食品業體를 대상으로 한 기탁유도 및 기탁량 증대를 위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영국 및 그리스와 같은 국가는 중앙단위 조직이 없이 지역단위 푸드뱅크 한 곳이 국가를 대표

하는 대행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국가마다 중앙단위 조직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食品業體의 기탁 정보를 총괄하여 직접 기탁을 받기도 하도, 또한 기탁업체와 인근에 소재한 지방단위의 푸드뱅크를 연계해 기탁토록 하고 있다. 지방조직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탁유도 업무를 실시한다.

#### 나. 關聯 法 및 制度

각국은 푸드뱅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 및 제도를 제·개정하여 기탁자와 수혜자를 돕고 있다. 미국의 Good Samaritan Act, Tax Reform Act, Surplus Property Donation Act와 캐나다의 Canada Assistance Plan, 그리고 프랑스의 Association de Bienfaisance loi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들 관련 법들의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業體나 個人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기탁품에서 발생된 安全問題에 관해서 기탁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둘째는 기탁품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된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保險 등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탁업체에게 기탁량에 따라 일정액의 관련 稅金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넷째는 기탁업체의 기탁품 운송을 자체차량이나 지원받은 차량을 이용해 전적으로 푸드뱅크가 담당하여 기탁업체의 輸送費 부담이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기탁한 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특정 호텔의 宿泊費와 交通費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고 있다.

#### 다. 勤務人力

푸드뱅크의 근무인력은 자원봉사자, 봉급을 받는 자, 파견근무자 등

의 세 종류로 크게 대별된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無報酬로 근무를 하는 인력으로 푸드뱅크 운영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유럽 여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1주일에 1~5일간 근무를 하며, 대부분 현재는 직장이 없는 失職者, 退職者, 公益奉仕要員의 신분이다. 봉급을 받는 인력은 상근직과 시간제 근무자로 구별이 되며 이들은 단체 혹은 개인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월급여를 받고 있다. 유럽 지역의 푸드뱅크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인력은 파견직 인력으로 이들은 運轉, 倉庫運營, 冷蔵·冷凍 技術 등 특수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로 푸드뱅크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인력으로 급여는 소속 업체에서 받게된다.

이러한 파견직 인력에 의해 푸드뱅크의 운영은 기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냉장·냉동 시설의 구비와 더불어 특수 인력의 근무로 新鮮度 維持가 요구되는 과일류, 菜蔬類 등을 취급하고 있다.

#### 라. 運營費

푸드뱅크 운영의 기본 원칙은 無費用, 無報酬이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는 필요하게 마련. 즉, 최소 인력의 인건비, 창고, 사무실 및 차량 등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그리고 컴퓨터 등 사무집행을 위한 장비비 등이다.

외국의 푸드뱅크는 寄託品에 단체나 개인의 기부금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기부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운영비는 이와같이 민간단체의 기탁금, 푸드뱅크 중앙본부의 分配金, 그리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주체이며, 미국의 일부 푸드뱅크는 수혜대상자들에게 \$1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독일은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시중가격의 50% 정도 할인된 價格에 기탁품을 판 돈으로 운영

비를 충당하고 있다.

#### 마. 施設 및 裝備

사무실, 창고, 수송차량과 사무실의 각종 消耗品 등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들이다. 이미 언급한 운영비 액수는 시설과 장비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그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다.

倉庫로는 일반 常溫倉庫가 대부분이며, 과일, 채소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기탁품을 保管, 貯藏하는 데 사용되는 냉장·냉동창고도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이지만 설치되어 있는 국가는 몇 개국 안된다. 냉장·냉동창고 및 이와 연계하여 수송시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食品의 新鮮度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인 냉장·냉동차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로 독일처럼 冷蔵·冷凍 保管을 요하는 제품을 푸드뱅크에서 전혀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과는 반대로 푸드뱅크에서 신선식품이 기탁, 분배되고 있다. 또한 기탁품에 대한 稅金 減免 등의 근거자료로 기탁받을 시 기탁품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부착된 트럭이나 대량의 기탁품을 트럭에 실어올릴 수 있는 기중기가 달린 트럭 등도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수송장비들이다.

#### 바. 寄託 및 分配

푸드뱅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寄託과 分配로 가능한 많은 양과 종류의 기탁품을 받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탁은 기탁품의 양, 종류, 기탁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기탁품의 양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종류로는 식품뿐만이 아니



라 비누, 샴푸 등의 生活用品과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각 종 소모 품류, 輸送車輛 등도 기탁대상 품목이 된다. 식품의 경우 잉여 농산물, 반품된 제품, 섭취는 가능하나 포장이나 商標不良으로 판매 불가능한 제품, 홍보용 제품, 조리된 시식 가능한 식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 등이 주종을 이룬다. 미국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남은 事務用品 및 천만불 상당의 시식 가능한 식품을 기탁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기탁하는 제품은 정상제품만 기탁받고 있다.

기탁 주체는 주로 제조업체, 流通 및 販賣業體, 개인이 해당되며, 미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법인 Federal Surplus Property Donation Act에 의해 정부도 기탁기관이 될 수 있다.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寄附金도 기탁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부금을 기탁할 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에 의한 기탁도 가능하다. 또한 푸드뱅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運營技法 즉, 기탁물품의 보관, 정리, 회계정리 등에 관한 관련 프로그램이나 방법 등을 지도해주는 기술적 지원도 기탁대상 품목에 포함되고 있다. 인력부문에 있어 이미 언급된 바 처럼 프랑스의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 기탁도 독특한 기탁품이라 할 수 있다.

분배는 기탁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업무로 분배 형태를 살펴보면, 무료급식, 특정식당에서의 특정 식사형태로의 무료급식, 小包裝 된 식품꾸러미 제공, 제품의 판매, 그리고 기부금의 분배 등이다. 수혜대상자는 중앙 푸드뱅크 조직에서 지역단위 푸드뱅크, 지역단위 푸드뱅크가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와 같은 支援慈善團體 그리고 지원자선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수혜대상자가 분배연결망이 되는 것이다.

수혜자의 선정 기준은 국가마다 다른데, 유럽의 경우는 복지단체보

다는 빈곤한 家口나 個人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각국마다 수혜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영구적인 빈곤자 외에 한시적인 자연재해 등에 의해 食品供給을 필요로 하는 계층도 수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美國의 경우 직장이 있으면서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어 푸드뱅크의 분배를 받아야 하는 절대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자체 차량으로 기탁품을 지원자선단체나 개인에게 수송해 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국가는 푸드뱅크나 지원자선단체에 수혜자가 直接 訪問하여 分配를 받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사. 弘報

여러 국가들은 기탁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단위의 푸드뱅크 조직은 자체적인 활동 외에 지방단위의 푸드뱅크 홍보활동도 지원해 주고 있다. 유럽연합 본부는 여러 국가를 대신하여 다국적 식품업체에 기탁을 유도하는 로비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전문기술직의 파견에 의한 인력 확보로 弘報活動도 다른 국가에 비해 논리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하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기탁업체들에게 寄託方法과 惠澤, 税金減免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Good Samaritan 즉, 『이달의 훌륭한 자선가』라는 제목으로 월마다 가장 많이 기탁한 업체를 선정하여 널리 선전하는 홍보전략은 식품업체들에게 기탁의지를 유도하는 가장 매력적인 홍보활동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정리한 결과가 <表 IV-19>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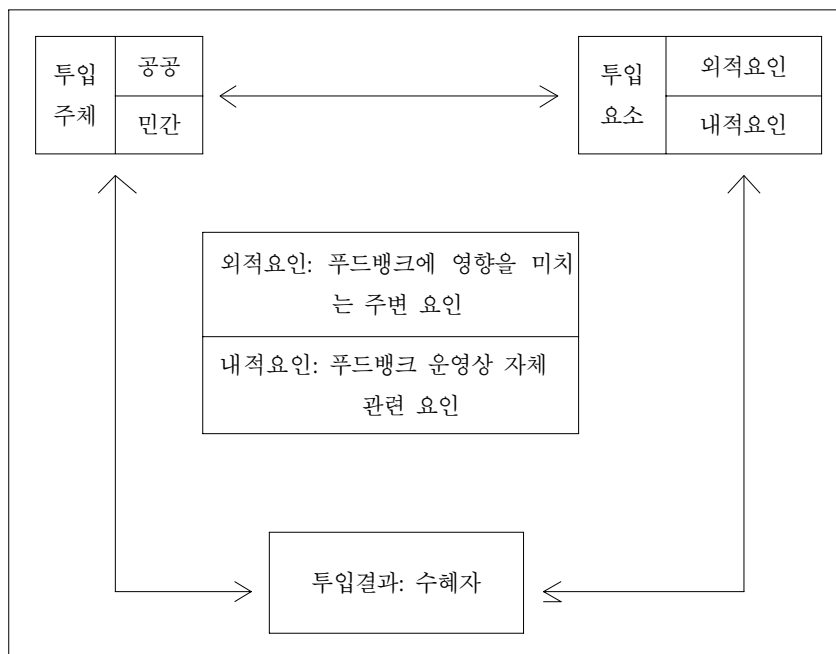
〈表 IV-19〉 主要 外國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比較

구 분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시작년도	1967	1981	1986	1984	-
조직체계	중앙본부 ↓ 지역푸드뱅크 ↓ 지원자선단체 ↓ 수혜대상자	좌동	-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는 1개소임. - 포르투갈은 중앙본부가 없음.	미국과 동일	좌동
기탁	- 식품 - 생활용품 - 기부금	좌동	좌동	- 신선식품류 가능 - 좌동	- 정상제품만 가능 - 신선식품류 불가능
분배	- 무료급식 - 꾸러미	좌동	좌동	좌동	- 제품판매
근무인력	- 자원봉사자 - 정규직	좌동	좌동	- 자원봉사자 - 정규직 - 파견직	- 자원봉사자
운영비	- 기부금 - 판매대금	- 기부금	- 기부금	- 기부금	- 판매대금 - 기부금
시설·장비	- 관련시설 및 장비	좌동	좌동	- 좌동 - 냉장·냉동차, 창고완비	- 판매시설 및 장비
홍보	- 중앙단위: 대기업 - 지역단위: 중소기업	좌동	- 다국적기업	미국과 동일	좌동
관련 법 및 제도	- 기탁자 세금 감면 - 기탁품에 의한 안전사고보장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운영원칙	무비용	무비용	무비용	무비용	무비용

## V.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設定

시범사업 실적, 확대실시 지역의 事業實績 및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지역 푸드뱅크장들의 의견조사, 그리고 외국 푸드뱅크와의 비교 등을 통해 인지된 여러가지 요인들이 한국형 푸드뱅크 模型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그림 V-1] 푸드뱅크 運營의 3大 要素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을 개발하고 조기 정착화를 위한 政策樹立을 위해서는 [그림 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푸드뱅크 사업의 3대

측이라 할 수 있는 사업 投入主體, 投入要素, 그리고 投入結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 푸드뱅크 사업의 투입주체와 푸드뱅크를 형성하고 있는 외형적인 환경측면을 주로 고려한 外的要因 및 푸드뱅크 운영상의 자체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한 內的要因이 된 투입요소, 그리고 이들의 종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수혜자의 복지혜택이 푸드뱅크의 3대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3대 축을 중심으로 각 부분을 세분화시켜 모형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運營財源 마련을 위한 재정적인 측면,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사회·문화적 합의, 사업 지원을 위한 법 및 제도의 뒷받침, 식품의 안전성 확보, 조직체계 정립, 시설·장비 및 인력 자원의 확보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전제에 앞서 푸드뱅크 사업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모든 사항에 우선하여 달성되어야겠다.

첫째, 지역사회내에서 푸드뱅크 사업의 수행단체로 역할하기를 원하는 관련 복지기관의 進入과 脫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둘째, 기탁식품의 분배는 공공과 민간시설 및 개인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分配政策이 수립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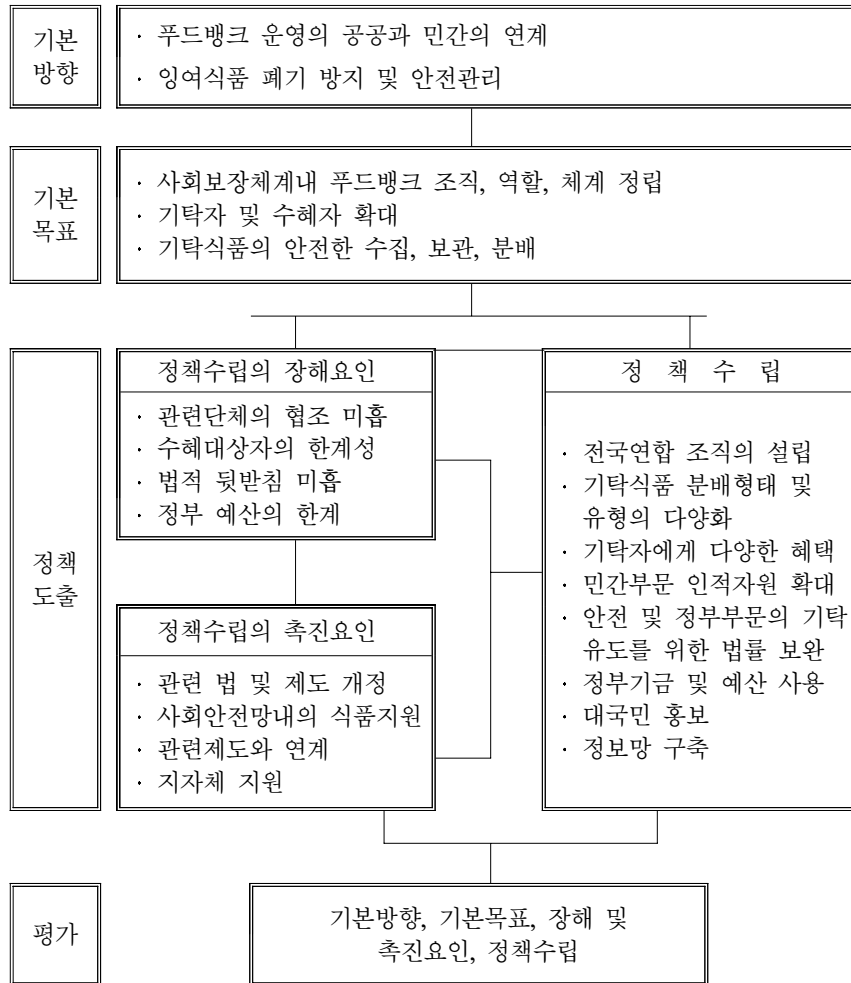
셋째, 푸드뱅크 사업의 정착화 단계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과 資源投入이 이루어지되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넷째, 기탁식품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도 평가 및 관리업무에 관한 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수립·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탁식품의 적정한 보관 및 분배를 위한 情報網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은 한국형 푸드뱅크 模型開發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림 V-2]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開發의 흐름圖



[그림 V-1]을 기본으로 푸드뱅크 사업의 정착화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고려사항을 세부적으로 개발한 것이 [그림 V-2]에 나타난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개발의 흐름도로 각각의 요인을 세부 항목별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基本方向

[그림 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푸드뱅크 정착화의 기본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民間과 公共의 연계에 의한 향후 푸드뱅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며, 둘째는 활용 가능한 자원, 특히 食品資源의 폐기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고 이들의 안전한 재활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 2. 基本目標

푸드뱅크 정착화의 세 가지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社會保障體系, 즉 사회안전망내에서의 푸드뱅크의 역할, 조직, 체계의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이고, 둘째는 사업의 活性化를 위하여 기탁자와 수혜자를 확대시키는 것이며, 세번째는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푸드뱅크 운영의 중심사업인 기탁식품의 수집·보관 및 분배와 같은 일련 과정에서의 食品安全 事故를 예방하는 안전성 확보이다.

## 3. 政策導出

### 가. 障害要因

푸드뱅크를 정착화시키기 위한 모형개발시 장해요인으로는 [그림 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그리고 대한영양사회 등 關聯團體의 협조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푸드뱅크 참여조직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수혜대상자가 施設受容者, 특

히 여성복지관련 시설 수용자로 대상으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기탁과 분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법적 뒷받침이 미비하며, 寄託擴大를 위한 관련 법의 제한성도 障害要因이 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하며, 특히 정착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정부 福祉豫算의 한계로 인하여 운영비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 나. 促進要因

장해요인과는 반대로 푸드뱅크 사업을 정착화시키는 데 지원 역할을 하는 촉진요인으로는 『食品公典』이 1998년에 전면 개정될 예정으로써 식품의 활용방안이 지지를 받게 되면 기탁품의 확대가 예상되며, 현재 社會安全網 체계내의 제3차 안전망에 食品救護 차원의 『식품권』이 설정되어 있어 푸드뱅크 사업이 사회안전망내에서의 위치 확보와 연계 구축이 가능해 푸드뱅크 정착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정책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시』를 수행하면서 남은 음식의 기탁이 유도될 수 있는 등 관련 정책 및 제도와의 연계로 역시 寄託食品量을 늘릴 수 있으며, 푸드뱅크에 관한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9월 이후 전국으로 푸드뱅크 사업이 확대되면서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 4. 政策樹立

기본방향과 기본목표에 충실하며 정책방안 수립에 障害 혹은 促進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또한 한국형 푸드뱅크



模型開發의 단계별 흐름은 푸드뱅크 운영의 3대 요소인 투입주체, 투입요소, 그리고 투입결과 부문에서 고찰되었던 전제조건들과의 상호 정책적인 연관성도 포함되며, 이것은 바람직한 푸드뱅크 정착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찰하여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 가. 組織體系

#### 1) 全國 總括組織

현재 廣域 및 基礎 푸드뱅크는 지역단위로 설립되어 나뉘대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전국연합조직이 전국여성복지연합회내에 설치되어 代表性和 客觀性이 결여되어 푸드뱅크 전국 총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의 조기 定着化와 效率化를 위해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가칭 『푸드뱅크 운영위원회』의 전국 조직 및 운영위원 구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객관성있고, 대표성있는 푸드뱅크 전국 조직이 설립되어야겠다. 그래야만 푸드뱅크 정착화의 기본방향인 민간과 공공간의 연계도 이러한 전국 總括組織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 地方組織

현재 56개 기초 푸드뱅크가 최소한 전국 144개 권역으로 확대 조직되어야 하겠다.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는 지역 전회권역으로 『푸드뱅크 1377』을 설치할 수 있는 개소수를 의미한다. 이들 廣域 및 基礎 自治團體는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아직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자치단체장과 지역 내 사회복지 관계

자의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관심도에 따라 설립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푸드뱅크의 활용정도에 따라 많은 미설치 지역에 푸드뱅크가 설치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3) 單位 푸드뱅크 組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등 개별 수혜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慈善機關 등을 단위 푸드뱅크라 할 수 있으며, 단위 푸드뱅크는 기초 푸드뱅크의 下位組織으로 푸드뱅크의 최종수혜자이다.

#### 나. 運營體系

푸드뱅크 운영체계로는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 기탁, 분배, 그리고 수혜대상자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 1) 豫算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조직의 크기, 사업성격, 역할 등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즉,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事務人力이 있어야 하고, 保管·輸送을 담당할 인력, 홍보·지도요원도 필요하다. 특히 푸드뱅크와 같이 기탁식품을 신속하게 수령하고, 타 푸드뱅크에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요구되며, 차량유지비가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보관·저장할 필요가 있다면 冷蔵·冷凍裝備도 있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최소의 經費는 정부가 지원하여 사업을 정착시키고 어느 정도 사업이 활성화 되면 민간 성금이나 회원들의 회비로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남은 食品을 아껴 활용해서

社會福祉分野에 투입하려는 정신과 배치될 수도 있고, 자발적인 참여 정신을 기초로한 시민운동의 기본정신을 전도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2) 人力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인력은 푸드뱅크 사업에 할애되어야 한다. 아직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필요없었으나 사업이 본격화 되면 적어도 훈련된 1명의 전담인력이 푸드뱅크에 상근해서 寄託者와 受惠者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어야 한다. 정규직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외국과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벌이고 있는 公共勤勞者를 취업시켜 사업을 정착화 시킨다면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그외에 輸送과 弘報 擔當人力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파견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다.

## 3) 施設 및 裝備

일반적인 시설 및 장비와 특수 시설 및 장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무실, 일반차량,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탁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保管倉庫 등이 그것이며, 特殊施設 및 裝備로는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 온도하에서 수송 및 보관에 필요한 냉장·냉동차량, 대형 냉장고와 향후 푸드뱅크 情報網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이다. 이들 시설 및 장비들도 기탁을 받을 수 있으면 바람직하고, 일부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公共機關에서 사용중인 컴퓨터, 차량 등 잉여분의 기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다. 寄託과 分配

### 1) 寄託

기탁은 기탁품의 형태 및 유형, 기탁품의 수송, 기탁품 확대 방안, 기탁품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安全事故에 대한 책임소재, 기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리고 기탁품의 관리 등으로 세분되어 고찰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푸드뱅크에 기탁할 수 있는 품목은 식품에 국한되어 있으나 외국과 같이 식품외에 비누, 화장지, 옷, 의자, 컴퓨터 등과 같은 生活用品의 기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적인 허락하에 誠金의 기탁도 이루어져 푸드뱅크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면 정부지원 없이 푸드뱅크가 민간차원에서 운영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예측된다.

식품도 현재 빵, 飲料水類, 調味料類 등과 같이 주로 加工食品이 기탁품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영양사회 등과 같은 관련 단체의 협조하에 조리된 음식, 食材料 등의 기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기탁품의 수송은 전적으로 지역 푸드뱅크에서 책임을 지고 수령토록 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適定溫度에서 수송,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기탁품의 관리 측면에서 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온도 하에서의 보관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기탁된 물품이 상업적인 물품으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2) 分配와 活用

분배는 기탁된 물품이 최종 수혜대상자에게 투명하게 분배되어 기탁량과 분배량이 같아져야 됨을 最大原則으로 한다. 물론 기탁품 중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분배전 廢棄되는 양도 있을 수 있지만 기탁품이 상업화되어 수혜대상자에게 분배되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탁품의 流通期限에 關連없이 기탁즉시 수혜대상자들에게 分配하여야 하며, 기탁품은 기탁받은 기관이 우선적으로 섭취하며, 초과량은 수송비 절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인근 푸드뱅크에 분배토록 한다.

기탁품의 分配形態는 현재 개별화된 식품별 분배에서 가공식품류의 경우 외국과 같이 식품꾸러미 형태로 다양한 加工食品類를 꾸러미화하여 분배하면 수혜대상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꾸러미식의 분배는 수혜대상자가 개인까지 확대될 경우 각 푸드뱅크가 설치된 시·군·구의 청사를 이용한 主別 혹은 月別 분배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향후에는 시·군·구청의 차량을 이용하여 조리된 음식의 수거시 바로 개인 수혜대상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公共 支援 體系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3) 受惠對象者

우리나라 푸드뱅크의 수혜대상자는 사업 초기라서 시설수용자와 무료급식소 노숙자 등에 한정되어 있다. 당연히 缺食兒童,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生活保護對象者 등 개인 수혜대상자로 범위를 넓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청의 협조하에 受惠對象者를 선정하여야 겠다. 수혜대상자가 個人으로까지 확대될 때에 진정한 푸드뱅크 사업은 외국과 같이 완전한 福祉制度로서

정착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弘報와 敎育

푸드뱅크 사업의 早期 定着과 활성화의 관건은 홍보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사회·문화적 忖意없이 완전한 복지제도로써 정착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푸드뱅크 운영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관된 후에도 公共에서 하여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바로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이다.

공공 言論媒體를 이용한 시청각적 홍보활동과 기탁실적이 우수한 기탁회원에 대한 공공적인 언론매체를 통한 포상과 정기적인 개별포상 등 寄託擴大를 위한 홍보관련 활동이 실시되어야겠다.

#### 마. 關聯 法 및 制度

푸드뱅크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법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장 법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외국과 마찬가지로 기탁품에 의해 발생된 安全事故에서 기탁자와 푸드뱅크 담당자들이 法的 責任과 負擔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법의 제·개정이나 관련법의 判例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고의성이나 중대한 過失이 없는 한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식품기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食品流通期限이 지난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식품유통기간에 관한 제도 개정을 통해 활용 가능한 상품이 폐기되고 廢棄費用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는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우수기탁자에게는 사회적 예우가 실질적으로 뒤따를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반영되어야겠다. 특히 개인 기탁자의 경우 부처별 합의하에 교통비, 공공 휴양시설의 사용료 등에 한하여 일정 비율 免除해 주는 유인책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겠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푸드뱅크 사업이 일과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복지 시책의 한 類型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근거나 예산상의 뒷받침, 運營組織의 법인화 등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 바. 政府支援

정부의 푸드뱅크 정착화 및 활성화를 위한 支援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현재의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가 완전 정착화되어 민간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조직이나 運營體系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하며, 필요한 일부 예산,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도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자들의 教育도 정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겠다. 즉, 푸드뱅크 운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같은 인성 교육 및 현장에서 필요한 올바른 食品鑑別法, 컴퓨터 사용법 등이 그것이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민간조직에게 이관된 후라도 정부차원의 弘報活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영원한 몫이다.

#### 사. 情報化

푸드뱅크 사업의 정착화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바로 정보화다. 푸드뱅크는 寄託者와 受惠者를 연결하는 정보망으로 이루어지므로 기탁자와 수혜자에 관한 情報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록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투명하고 올바른 기탁과 분배를 위해서는 각 푸드뱅크간에 정보화 즉, 「푸드뱅크 정보망(가칭)」이 구축되어 情報 交流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장비의 구비와 관련자들의 교육, 그리고 정부차원의 超高速情報網 구축에 푸드뱅크 정보망을 포함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開發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의 발전 및 시행실시 단계별로 基礎型, 發展型, 先進型으로 설정해 볼 수 있으며 이들 세 가지 모형별 특징이 <表 V-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 가. 基礎型

기초형은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된 조직의 형태로 앞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갖고 있어 보완하여야 할 점이 가장 많은 형태이다. 1999년 定着化 단계를 거치면서 선진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형의 기초 형태이다.

기초형은 <表 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직은 官主導型으로 푸드뱅크 사업의 완전 정착을 이루어야 할 示範事業 후의 형태로 최소한의 운영에 소요되는 豫算을 중앙정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며, 푸드뱅크 조직은 전국 총괄조직의 설립과 함께 현재 56개소에 국한된 지역 푸드뱅크를 『1377』 特殊電話가 설치될 수 있는 144개 전화 설치 권역에 따라 총 144개소로 확대 조직하여야 한다.

관련 법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근간이 되는 관련 법 및 제도의 제·개정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국 관련 법 조항의 세부적인 검토와 한국형 관련 법 및 제도의 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分配方式은 시범사업시기의 무료분배와 더불어 대한영양사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의 협조하에 특정식당에서 특정시간에 수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無料給食을 일부 실시한다. 현재 종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그대로 실시토록 한다.

현재 기존 복지단체의 施設, 裝備, 人力, 事務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사업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시설 및 장비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향후 先進型에서 완전 구축될 푸드뱅크간 정보망 설치를 위한 관련 장비 및 시설의 마련 등 情報化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나. 發展型

1998년 시범사업과 1999년 정착 단계를 거친 활성화 단계이자 선진형으로 발전하기 전단계 형태로 이 시기에 푸드뱅크의 형태가 완전히 구축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1999년 1년간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생활용품 재활용 방안'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푸드뱅크 기탁품의 종류를 기존 食品에다 生活用品까지 확대 실시하여 구색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채소나 과일 같은 新鮮食品의 寄託과 分配가 가능토록 Cold-Chain System(저온유통시스템)을 구비토록 한다.

일단 정착단계를 지나 활성화단계이므로 관과 민이 상호 보완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토록 하며, 정부의 개입을 단기형에 비해 50% 정도 節減토록 하며 정부단위의 지원도 중앙정부보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따라서 푸드뱅크 사업의 운영비도 중앙정부

단위의 지원은 종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하에 푸드뱅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한다.

푸드뱅크 사업의 3대 축의 하나인 受惠對象者에 시설수용자외에 소년·소년가장,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개인단위까지 전면 확대하며, 또한 水害, 火災 등 自然災害에 의해 발생한 한시적인 대상자도 수혜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분배는 기초형과 마찬가지로 無料分配形態를 유지토록 하나 기탁품이 生活用品으로 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과 생활용품을 적절히 혼합한 꾸러미화하여 분배토록 한다. 또한 기초형에서 일부 실시하였던 무료급식을 완전 정착시켜 꾸러미의 분배 외에 필요한 수혜대상자들에게 세끼 食事を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

푸드뱅크 운영에 정규직 인력이 투입되며, 광역 푸드뱅크 단위까지는 푸드뱅크 정보망이 완전 설치되어야 한다.

#### 다. 先進型

외국의 운영형태 중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모두 갖춘 완벽한 푸드뱅크 형태이다. 국내 조직체계가 완전히 설립되었기 때문에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국제교류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국제단위의 교류 및 사업은 全國 總括組織이 담당하도록 한다.

기탁품의 종류를 現金까지 확대시켜 푸드뱅크 事業 運營費와 정규직 인력의 人件費로 사용토록 하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관련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또한 低溫流通시스템의 완전구비로 채소와 과일 등 新鮮食品類의 기탁도 가능하며, 이들의 분배도 가능토록 한다.

〈表 V-1〉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開發

구분	기초형	발전형	선진형
조직체계	총괄조직 설립 지방조직 확대	전국 조직확대	국제교류
기탁품	식품류 일부 생활용품	식품류 생활용품	식품류 신선식품 생활용품 돈
분배방식	무료분배 일부 무료급식	무료분배 꾸러미화 무료급식	무료분배 및 판매 꾸러미화 무료급식
운영예산	중앙정부 지자체지원	지자체 지원 자체마련	자체마련
전담 인력	기존인력 공공근로인력	자원봉사자 상근직 인력	상근직 인력 자원봉사자
수혜대상자	시설수용자 일부 개인	시설수용자 개인 일부 한시적 대상자	시설수용자 개인 한시적 대상자
관련법 및 제도	기탁자보호법 세금감면확대	좌동	좌동
홍보활동	관민협동	관민협동	관민협동 홍보전문가
운영주체	관주도	관+민간주도	민간주도
민간참여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기탁유인방안	공공시설 이용할인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및 기본 장비 마련	컴퓨터 완비, 일부 저온유통시스템 구비	저온유통시스템 완비
정보화	기반조성	광역푸드뱅크 구축	완전 구축

分配方式도 무료분배형식과 더불어 운영비 충당, 분배품에 대한 애착, 그리고 수혜대상자들의 情緒的인 滿足感 향상을 위해 일부 제품 및 꾸러미는 적정가격에 販賣토록 한다.

이와 같은 운영으로 푸드뱅크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자체마련토록 하며, 운영주체도 완전히 民主導型으로 전환된다.

민간부분의 푸드뱅크 사업 참여도 다양화하여 기탁품외에 專門家를 한시적으로 파견 근무토록 하여, 기탁품의 보관 및 정리, 무료급식시의 협조, 전문적인 홍보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수송시 차량 운전 등의 技術的인 參與가 있어야 하겠다.

푸드뱅크간 情報化가 완전 구축되어 기탁품의 수송 및 분배과정상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 6. 韓國型 푸드뱅크 模型 設定의 政策的 含意

약 7개월의 示範事業을 마치고 전국 확대 실시에 들어간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하면 일천하지만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의 건국』이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으로 설정되고 각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통고유의 미덕인 식품 나누기로 계층간 社會共感代를 재형성하며 더불어 절약이 강조되는 시기에 食品資源의 浪費를 예방하며, 또한 시대적·사회적 산물인 경제적 脆弱階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로 푸드뱅크는 시작된 것이다.

전담인력의 부족, 냉장·냉동체계의 미비, 최저 운영비의 미확보, 자원봉사자의 참여 저조, 寄託會員 및 기탁품의 불충분, 總括組織의 脆弱性, 지속적인 홍보 및 관심 부족, 그리고 관련 법 및 제도의 불확실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차차 개선되어 효율성있는 制度로 정착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아직은 부족한 民間 部門의 역할과 참여 자세를 배가시켜 향후 푸드뱅크가 외국과 마찬가지로 민간 차원의 福祉制度로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절한 支援과 觀心 및 弘報가 현재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향후 푸드뱅크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단계별 한국형 모형개발이 基礎型, 發展型, 그리고 先進型으로 설정되었고 각 모형별 실천요인들이 제시되었다.

개발된 한국형 모형에 따라 푸드뱅크가 차질없이 발전될 수 있다면 한국적 새로운 福祉制度의 구현과 資源浪費 豫防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국가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7.
- 보건복지부,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재, 1998. 9.
- 서영모, 「국가재정과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보건복지포럼』, 제12호, 1997.
- 유기영,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7.
- 유럽연합, 『1997년 식품은행 운영현황』, 1998.
- 정기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연구』, 1996.
- 정우철, 「음식물쓰레기 속에 돈이 보인다」, 『Food & Restaurant』, 1998년 5월호.
- 정형선, 「OECD 국가의 사회안전망」, 『보건복지포럼』, 제25호, 1998.
-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문화관광부 정부간행물제작소, 199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안)에 관한 공청회(1999~2003)』, 199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각국의 국민복지 기본선』, 1998.
- 한세익·조찬형, 『지역정보화 이론과 실제』, 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 U.S. Bureau of the Census, *Regular Current Population Survey*, 1995.
- <http://www.fbwny.org/history.html>(푸드뱅크 of WNY 홈페이지)
- <http://www.secondharvest.org>(Second Harvest 홈페이지)
- <http://www.gbfb.org>(The Greater Boston 푸드뱅크 홈페이지)
- <http://www.libertynet.org> (Greater Philadelphia 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orlando.digitalcity.com>(Second Harvest 푸드뱅크 of Central Florida 홈페이지)

<http://www.citycare.com/lvfoodbank>(The Community 푸드뱅크 of Clark Country 홈페이지)

<http://www.sffoodbank.org>(San Francisco 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hawaiifoodbank.org>(Hawaii 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gbfb.org>(The Greater Boston 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chicagosfoodbank.org>(The Greater Chicago Food Depository 홈페이지)

<http://www.fbem.org/>(Food Bank of Eastern Michigan 홈페이지)

<http://cyberkansas.com/ksfoodbank/hunger.html>(Kansas Foodbank Warehouse 홈페이지)

<http://www.nonprofitnet.com>(Community 푸드뱅크 of Tucson 홈페이지 )

<http://www.orlando.digitalcity.com>(Second Harvest 푸드뱅크 of Central Florida 홈페이지)

<http://www.citycare.com/lvfoodbank>(The Community 푸드뱅크 of Clark Country 홈페이지)

<http://www.sffoodbank.org>(San Francisco 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Xpressnet.com/harvest>(Winnipeg Harvest 홈페이지)

Capital Health Region의 인터넷 홈페이지

## 附 錄

附錄 1. 푸드뱅크 현황 조사표 / 141

附錄 2. 全國 푸드뱅크 네트워크 / 145

附錄 3. 유럽 여러 國家들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 149



附錄 1.

푸드뱅크 현황 조사표

정부에서는 무료급식소·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잉여식품을 제공하고자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귀 푸드뱅크의 적극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말까지 푸드뱅크를 활성화시켜 제도로서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형 푸드뱅크모델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필요한 푸드뱅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 조사표를 보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1. 푸드뱅크명(지역명, 설치기관)**

\* 예시 : 서울광역푸드뱅크(서울, 은성직업기술원)

**2. 종사자수**

- 2-1. 총직원수(원장포함) : \_\_\_\_\_명
- 2-2. 푸드뱅크 담당직원수 : \_\_\_\_\_명(전담\_\_\_\_\_명, 겸직\_\_\_\_\_명)
- 2-3. 공공근로사업 지원인력수 : \_\_\_\_\_명(전담\_\_\_\_\_명, 겸직\_\_\_\_\_명)
- 2-4. 자원봉사자 수(매월 1주 이상 참여자) : \_\_\_\_\_명

**3. 관련 시설 현황**

- 3-1. 냉장차 : 있음(화물적재량 : \_\_\_\_\_톤), 없음
- 3-2. 냉장고 : 있음(용량 : \_\_\_\_\_ℓ), 없음
- 3-3. 봉고차 : 있음(\_\_\_\_\_대, \_\_\_\_\_인승), 없음

**4. 급식시설 현황(푸드뱅크에서 직접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 4-1. 독립급식소 건물 : 있음, 없음
- 4-2. 독립급식소가 없을시 급식 제공장소 :
- 4-3. 부대시설 종류 : 주방, 의자(     개), 식탁(     개), 기타(     )

**5. 기탁자 현황('98. 10. 1~10. 31)**

5-1. 기탁자 회원 현황

구분	합계	식품 회사	재래 시장	슈퍼 가게	농·수 축산물	제과점	급식소	농장	기타
회원현원									
당월	신규								
	탈퇴								

\* 회원현원: 전원현원 + 신규 - 탈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탁의사를 밝힌 관리 대상자)



9. 1998. 10. 기탁자·수령자 명단(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재 p23 참조)

10. 수혜자들의 푸드뱅크에 대한 의견

11. 향후 확대 및 완전 정착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

11-1. 예 산 :

11-2. 조 직 :

11-3. 기 타 :

12.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사항

13.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사항

14.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내역을 2가지 열거할 것.

15. 현재까지 사고 발생 여부 : 있음, 없음

15-1. 있는 경우 : 구체적 내용 명기

16. 향후 예견되는 사고등 문제점

17. 푸드뱅크에 대한 주변의 견해

18. 연구진에게 주고싶은 푸드뱅크에 관한 귀하의 의견

## 附錄 2. 全國 푸드뱅크 네트워크

- 행정구역별로 광역·기초·단위 푸드뱅크를 설치하고 전국 연계망을 구축한다(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군·구, 단위는 시설 중심)
- 기초·단위 푸드뱅크는 점차 확대 설치하고,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는 「푸드뱅크1377」을 필수적으로 개통해야 한다.
- 광역·기초푸드뱅크는 행정기관이 지정하거나 「푸드뱅크」 참여기관이 호선하여 선정하고, 단위 푸드뱅크는 시·군·구에 등록하여 설치한다.

지 역 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지역 번호	일반전화
전국연합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1451호	02	712-0713
서 울 (과천, 광명)	여성직업기술원 (최주찬)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1451호	02	712-0766
부 산	인애모자원 (조생래)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169-1	051	241-1133
대 구 (경산, 달성, 하양)	기독교가정복지관 (안희중)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19	053	472-1400
인 천 (부천, 시흥, 옹진, 강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인천시 남구 송의1동 146-16 사회복지관내	032	883-1776
광 주	인애모자원 (김인제)	광주시 남구 봉선2동 132	062	672-9312
대 전	대전여성의집 (홍성효)	대전시 서구 복수동 283-271	042	583-8875

지 역 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지 역 번 호	일반전화	
울 산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신말선)	남구 신정1동 646-4	052	276-2178	
경 기	수 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백이선)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42-97	0331	258-8551
	안 양 군 포 의 왕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황영희)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	0343	86-6151
	성 남	햇살어린이집(조혜정)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6-7	0342	721-0301
강 원	강 룡	성은모자원(김철중)	강릉시 유산동 518-1	0391	645-3302
	춘 천	마리아의집 (노정순)	춘천시 석사동 194	0361	262-4617
	원 주	상애원 (김희찬)	원주시 해구동 산 135	0371	47-8080
충 북	청 주 청 원	한국복지재단 청주지부(이진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09-6	0431	253-4493
	충 주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오형진)	충주시 연수동 552-1	0441	852-5030
	제 천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김정식)	제천시 의림동 42-4	0443	645-5004
충 남	서 산 태 안	서산종합사회복지관 (이수근)	서산시 석림동 657-2	0455	667-2303
	공 주	충남여성직업보도원 (권찬덕)	공주시 오곡동 791-3	0416	52-7081
	논 산	에덴보육원 (노봉욱)	논산시 연무읍 동산3리 880	0461	741-4183
	보 령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안상현)	보령시 명천동 413	0452	936-8501
	천 안	익선원 (김자룡)	천안시 성리읍 모전리	0417	564-5209
	홍 성	장수경양로원(곽지정)	홍성군 은하면 금곡리	0451	642-4482

지 역 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지 역 번 호	일반전화	
전 북	전 주 완 주	원광모자원 (유정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46	0652	222-7383
	김 제	길보종합사회복지관 (고경환)	김제시 신흥동 88-22	0658	546-1228
	남 원	남원사회복지관 (문홍근)	남원시 노암동 275	0671	632-5253
	정 주 읍	정읍사회복지관 (고재만)	정읍시 수성동 79-17	0681	531-3895
	군 산	군산종합사회복지관 (황경호)	군산시 산북동 3611-1	0654	465-1428
익 산	원광종합사회복지관 (김인숙)	익산시 신동 423-1	0653	856-2361	
전 남	목 포 신 안	목포영생원 (김길욱)	목포시 용당동 1077-2	0631	276-1434
	여 수	여수문수종합복지관 (김정욱)	여수시 문수동 797	0662	652-4242
	순 천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윤동성)	순천시 인제동 121	0661	741-3055
	나 주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서광우)	나주시 죽림동 88	0613	332-8992
	해 남	해남등대원 (이준묵)	해남군 해남읍 해리573	0634	536-2048
함 평	함평자광모자원 (유영자)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0-1	0615	741-3055	
경 북	포 향	포항모자원 (신인숙)	포항시 남구 송도동 436-44	0562	47-4261
	경 주	경주애가원 (김성녀)	경주시 황성동 472-3	0561	772-5440
	고 령	국제재활원 (전성용)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9	0543	954-4176
	안 동	안동복지원 (김운애)	안동시 옥동 981-1	0571	52-0929
	영 덕	경북기독교보육원 (이성복)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408	0564	732-0426

지역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치주소	지역번호	일반전화
경북	영천	영천희망원(이상근)	영천시 작산동 130	0563 335-3633
	울진	후포영신모자원(신춘웅)	울진군 후포면 삼을리 188-3	0565 788-2111
	의성	의성자혜원(박철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136	0576 833-2900
	구미	삼성원(신영화)	구미시 형곡동 73-3	0546 52-8487
	김천	베다니보육원(박신웅)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576	0547 436-6275
	성주	실로암육아원(전영애)	성주군 수륜면 산파리 산64-2	0544 932-3551
경남	칠곡 왜관	상록모자원(홍두표)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73-2	0545 971-0877
	마산 창원	창원여성의집(조현순)	창원시 서북면 동전리 532-1	0551 98-8363
	김해	희망모자원(송수홍)	김해시 부원동 27	0525 336-2121
	남해	남해자애원(이상철)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258	0594 864-2268
	밀양	성우애육원(손영진)	밀양시 가곡동 577-40	0527 355-2338
	산청	성심원(강효식)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0	0596 973-6966
	의령	경남종합복지마을(서익수)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77-2	0555 574-3633
	진주	프란치스코의집(백종순)	진주시 하대동 102-1	0591 759-2275
	통영	통영신애원(김경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34-4	0557 649-1020
합천	합천애육원(서정환)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39-2	0599 931-2370	

\*  전국푸드뱅크연합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 附錄 3. 유럽 여러 國家들의 푸드뱅크 運營 現況

〈附表 1〉 벨기에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1. 푸드뱅크(개소)

	1997. 1. 1	연중	1997. 12. 31
설립된 푸드뱅크	9	0	9
활동중인 푸드뱅크	9	0	9

2. 분배

1997년 지원기관(개소)	627
월 평균 수혜자수(명)	80,260

3. 기탁량(kg)

기탁량

분배량

· 반품	111,300	
· 유럽 연합	1,587,499	
· 제조업체	3,360,518	
· 유통업체	0	
· 개인	753,696	
총 계	5,813,013	5,480,989

4. 기탁 기관수(개소)

130

5. 운영비

1997년 총 운영비	586,600
1997년 재정 지원	
공공 부조	0
민간 부조	615,500
기 타	0
총 계	615,500

6. 근무인력(명)

자원봉사자(일주일에 1~5일 근무)	110	
봉급자		
상근제	0	
시간제	0	
계약회사 파견직	0	110

7. 시설

창고(m <sup>2</sup> )	7,015
사무실(m <sup>2</sup> )	328
냉장창고	
냉장창고(m <sup>2</sup> )	535
냉동창고(m <sup>2</sup> )	1,524

8. 수송수단:

		수(대)	총계
차량	냉장	5	
	냉동	3	
	일반	0	8

9. 운반차량:

		수(대)	총계
저울이 부착된 트럭		10	
저울이 없는 트럭		27	
기중기가 부착된 트럭		10	47

〈附表 2〉 스페인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1. 푸드뱅크(개소)

	1997. 1. 1	연중	1997. 12. 31
설립된 푸드뱅크			
활동중인 푸드뱅크	5		5

2. 분배

1997년 지원기관(개소)	864
월 평균 수혜자수(명)	160,000

3. 기탁량(kg)

기탁량

분배량

· 반품	2,449,725	
· 유럽 연합	459,607	
· 제조업체	486,367	
· 유통업체	44,396	
· 개인	8,069	
총 계	3,448,164	3,481,987

4. 기탁 기관(개소)

592
-----

5. 운영비(xeu)

1997년 총 운영비	23,279
1997년 재정 지원	
공공 부조	56,886
민간 부조	23,952
기    타	
총    계	80,838

6. 근무인력(명)

자원봉사자(일주일에 1~5일 근무)	112	
봉급자		
상근제		
시간제		
계약회사 파견직		112

7. 시설

창고(m <sup>2</sup> )	4,300
사무실(m <sup>2</sup> )	340
냉장창고	
냉장창고(m <sup>2</sup> )	
냉동창고(m <sup>2</sup> )	

8. 수송수단(대)

		수	총계
차량	냉장	1	
	냉동		
	일반	1	2

9. 운반 차량

		수(대)	총계
	저울이 부착된 트럭		
	저울이 없는 트럭	9	
	기중기가 부착된 트럭	5	14

〈附表 3〉 프랑스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1. 푸드뱅크(개소)

	1997. 1. 1	연중	1997. 12. 31
설립된 푸드뱅크	70	2	72
활동중인 푸드뱅크	70	1	71

2. 분배

1997년 지원기관(개소)	3,800
월 평균 수혜자수(명)	771,000

3. 기탁량(kg)

	기탁량	분배량
· 반품	5,896,728	
· 유럽 연합	10,282,152	
· 제조업체	18,021,614	
· 유통업체	7,963,446	
· 개인	8,456,984	
총 계	50,620,924	48,674,793

4. 기탁 기관수(개소)

5. 운영비(xeu)

1997년 총 운영비	6,826,000
1997년 재정 지원	
공공 부조	2,817,000
민간 부조	187,000
기 타	4,320,000
총 계	7,324,000

6. 근무인력

자원봉사자(일주일에 1~5일 근무)	1,723	
봉급자		
상근제	27	
시간제	14	
계약회사 파견직	268	2,032

7. 시설

창고(m <sup>2</sup> )	45,733
사무실(m <sup>2</sup> )	4,416
냉장창고	
냉장창고(m <sup>2</sup> )	3,308
냉동창고(m <sup>2</sup> )	2,066

8. 수송수단

		수(대)	총계
차량	냉장	32	
	냉동	40	
	일반	72	144

9. 운송 차량

		수(대)	총계
	저울이 부착된 트럭	8	
	저울이 없는 트럭	200	
	기중기가 부착된 트럭	87	295

〈附表 4〉 그리스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1. 푸드뱅크(개소)

	1997. 1. 1	연중	1997. 12. 31
설립된 푸드뱅크	1	0	1
활동중인 푸드뱅크	1	0	1

2. 분배

1997년 지원기관(개소)	70
월 평균 수혜자수(명)	5,500

3. 기탁량(kg)

기탁량

분배량

· 반품	0	
· 유럽 연합	0	
· 제조업체	183,613	
· 유통업체	102,162	
· 개인	6,694	
총 계	292,469	253,080

4. 기탁 기관수(개소)

5. 운영비(xeu)

1997년 총 운영비	68,000
1997년 재정 지원	
공공 부조	0
민간 부조	30,287
기 타	37,815
총 계	68,102

6. 근무인력

자원봉사자(일주일에 1~5일 근무)	27	
봉급자		
상근제	2	
시간제	0	
계약회사 파견직	0	29

7. 시설

창고(m <sup>2</sup> )	281
사무실(m <sup>2</sup> )	42
냉장창고	
냉장창고(m <sup>2</sup> )	37
냉동창고(m <sup>2</sup> )	37

8. 수송수단

수(대)

총계

차량	냉장	0	
	냉동	0	
	일반	1	1

9. 운송 차량

수(대)

총계

저울이 부착된 트럭	0	
저울이 없는 트럭	0	
기중기가 부착된 트럭	1	1



〈附表 5〉 아일랜드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1. 푸드뱅크(개소)

	1997. 1. 1	연중	1997. 12. 31
설립된 푸드뱅크	1	0	1
활동중인 푸드뱅크	1	0	1

2. 분배

1997년 지원기관(개소)	66
월 평균 수혜자수(명)	11,000

3. 기탁량(kg)

기탁량

분배량

· 반품	0	
· 유럽 연합	30,000	
· 제조업체	449,000	
· 유통업체	0	
· 개인	0	
총 계	479,000	484,000

4. 기탁 기관수(개소)

30
----

5. 운영비(xeu)

1997년 총 운영비	
1997년 재정 지원	
공공 부조	
민간 부조	
기 타	
총 계	

6. 근무인력

자원봉사자(일주일에 1~5일 근무)	7	
봉급자		
상근제	2	
시간제	2	
계약회사 파견직	0	11

7. 시설

창고(m <sup>2</sup> )	125
사무실(m <sup>2</sup> )	10
냉장창고	
냉장창고(m <sup>2</sup> )	24
냉동창고(m <sup>2</sup> )	24

8. 수송수단

	수(대)	총계
차량    냉장	0	
냉동	1	
일반	0	1

9. 운반 차량

	수(대)	총계
저울이 부착된 트럭	0	
저울이 없는 트럭	0	
기중기가 부착된 트럭	0	0

〈附表 6〉 이탈리아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1. 푸드뱅크(개소)

	1997. 1. 1	연중	1997. 12. 31
설립된 푸드뱅크	15	1	16
활동중인 푸드뱅크	15	1	16

2. 분배

1997년 지원기관(개소)	2,862
월 평균 수혜자수(명)	499,000

3. 기탁량(kg)

기탁량

분배량

· 반품		
· 유럽 연합	9,950,104	
· 제조업체	6,116,632	
· 유통업체	513,330	
· 개인	1,726,151	
총 계	18,306,217	17,655,722

4. 기탁 기관수(개소)

200

5. 운영비(xeu)

1997년 총 운영비	740,000
1997년 재정 지원	
공공 부조	288,000
민간 부조	292,000
기 타	32,000
총 계	612,000

6. 근무인력

자원봉사자(일주일에 1~5일 근무)	453	
봉급자		
상근제	5	
시간제	3	
계약회사 파견직	9	470

7. 시설

창고(m <sup>2</sup> )	8,768
사무실(m <sup>2</sup> )	479
냉장창고	
냉장창고(m <sup>2</sup> )	1,926
냉동창고(m <sup>2</sup> )	

8. 수송수단

		수(대)	총계
차량	냉장	1	
	냉동	0	
	일반	3	4

9. 운반 차량

		수(대)	총계
	저울이 부착된 트럭	12	
	저울이 없는 트럭	6	
	기중기가 부착된 트럭	12	30

〈附表 7〉 포르투갈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1. 푸드뱅크(개소)

	1997. 1. 1	연중	1997. 12. 31
설립된 푸드뱅크	3	2	5
활동중인 푸드뱅크	3	2	5

2. 분배

1997년 지원기관(개소)	393
월 평균 수혜자수(명)	56,500

3. 기탁량 (kg)

	기탁량	분배량
· 반품	534,053	
· 유럽 연합	931,257	
· 제조업체	2,852,135	
· 유통업체	122,343	
· 개인	1,148,848	
총 계	5,588,636	5,259,238

4. 기탁 기관수(개소)

373
-----

5. 운영비(xeu)

1997년 총 운영비	359,820
1997년 재정 지원	124,805
공공 부조	
민간 부조	576,620
기 타	10,000
총 계	711,425

6. 근무 인력

자원봉사자(일주일에 1~5일 근무)	115	
봉급자	9	
상근제		
시간제	5	
계약회사 파견직		129

7. 시설

창고(m <sup>2</sup> )	3,240
사무실(m <sup>2</sup> )	282
냉장창고	
냉장창고(m <sup>2</sup> )	127
냉동창고(m <sup>2</sup> )	157

8. 수송수단

		수(대)	총계
차량	냉장	1	
	냉동	1	
	일반	4	6

9. 운반 차량

		수(대)	총계
	저울이 부착된 트럭	0	
	저울이 없는 트럭	16	
	기중기가 부착된 트럭	6	22

〈附表 8〉 英國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1. 푸드뱅크(개소)

	1997. 1. 1	연중	1997. 12. 31
설립된 푸드뱅크	1	0	1
활동중인 푸드뱅크	1	0	1

2. 분배

1997년 지원기관(개소)	53
월 평균 수혜자수(명)	80,260

3. 기탁량(kg)

기탁량

분배량

· 반품		
· 유럽 연합	5,934	
· 제조업체	21,769	
· 유통업체		
· 개인		
총 계	27,703	27,703

4. 기탁 기관수(개소)

28
----

5. 운영비(xeu)

1997년 총 운영비	26,590
1997년 재정 지원	
공공 부조	
민간 부조	26,590
기 타	
총 계	26,590

6. 근무인력

자원봉사자(일주일에 1~5일 근무)	2	
봉급자		
상근제		
시간제	1	
계약회사 파견직		3

7. 시설

창고(m <sup>2</sup> )	56
사무실(m <sup>2</sup> )	3
냉장창고	
냉장창고(m <sup>2</sup> )	
냉동창고(m <sup>2</sup> )	

8. 수송수단

수(대)

총계

차량	냉장	0	
	냉동	0	
	일반	1	1

9. 운반 차량

수(대)

총계

저울이 부착된 트럭	0	
저울이 없는 트럭	0	
기중기가 부착된 트럭	0	0



〈附表 9〉 체코의 1997年 푸드뱅크 運營 現況

1. 푸드뱅크(개소)

	1997. 1. 1	연중	1997. 12. 31
설립된 푸드뱅크	6	0	6
활동중인 푸드뱅크	1	0	1

2. 분배

1997년 지원기관(개소)	29
월 평균 수혜자수(명)	3,000

3. 기탁량(kg)

기탁량

분배량

· 반품	0	
· 유럽 연합	0	
· 제조업체	132,000	
· 유통업체	34,000	
· 개인	0	
총 계	166,000	164,000

4. 기탁 기관수(개소)

78
----

5. 운영비(xeu)

1997년 총 운영비	
1997년 재정 지원	
공공 부조	
민간 부조	
기    타	
총    계	

6. 근무인력

자원봉사자(일주일에 1~5일 근무)		
봉급자		
상근제		
시간제		
계약회사 파견직		

7. 시설

창고(m <sup>2</sup> )	20
사무실(m <sup>2</sup> )	
냉장창고	
냉장창고(m <sup>2</sup> )	
냉동창고(m <sup>2</sup> )	

8. 수송수단

수(대)

총계

차량	냉장		
	냉동	0	
	일반	0	0

9. 운송차량

수(대)

총계

저울이 부착된 트럭	
저울이 없는 트럭	
기준기가 부착된 트럭	

## 著者略歷

---

### • 鄭基惠

서울대학교 農家政學科 卒業  
서울대학교 保健大學院 保健學 碩士  
서울대학교 教育學 博士 (營養教育 專攻)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主要 著書〉

『Cold-Chain System 構築을 통한 食品流通構造 改善』, 1997. (共著)  
『輸入食品의 安全性 管理現況과 政策課題』, 1996. (共著)

---

### • 朴壽天

崇實대학교 中小企業大學院 行政學 碩士  
日本 早稻田대학교 戰略經營過程 修了  
現 保健福祉部 精神保健課長

---

### • 金映來

檀國대학교 食品營養學科 卒業  
濠洲 뉴사우스 웨일즈大學 保健計劃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

政策報告書 98-05

---

---

## 푸드뱅크의 定着化 方案

---

---

1998年 12月 日 印刷 畝: 5,000원

1998年 12月 日 發行

著 者 鄭基惠·朴壽天·金映來

發行人 鄭 敬 培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 : 02) 355-8003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大明文化社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8

---

---

ISBN 89-8187-150-7 93330